

人口動態統計改善方案(資料)

('83. 10.)

통계청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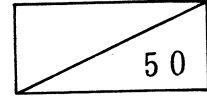


B0003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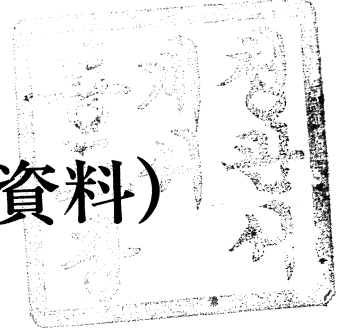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人口統計課

310.121
76746



人口動態統計改善方案(資料)



('83. 10.)

人口統計課

46616



目 次

I. 人口動態統計 (Vital statistics, 生命統計)의 意義	3
1. 概 念	3
2. 作成目的	3
3. 作成方法	3
II. 우리나라의 人口動態統計	3
1. 概 況	3
2. 問 題 點	5
III. 改善方案	8
1. 申告資料의 正確度 提高方案	8
2. 分析機能의 活性化 方案	19
IV. 改善事業에 따른 關係部處	22
參 考 資 料	27

I. 人口動態 統計(Vital Statistics, 生命統計)의 意義

1. 概念

- 人間의 出生·死亡(死亡原因), 死産, 婚姻等 出生에서 부터 始作하여 死亡에 이르기까지 겪은 모든 事象과 그 變化를 記錄한 것임.

2. 作成目的

- 人口數 및 構造變動要因(出生, 死亡, 移動) 등 人口現象의 把握과 將來人口를 豫測하는데 基礎資料로 活用.
- 國民保健 및 의료분야와 關連된 諸般現象(母子保健, 死亡力, 死亡原因等)을 把握함은 물론 이들 分野의 政策評価 資料로 活用.

3. 作成方法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世界 各國에서는 基本的으로 國民申告制度에 의하여 作成하고 있으며 이는 人口動態資料를 全國的인 規模로 體系的이고 効率的으로 生産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이기 때문임.
- 社會保障制度가 發達한 先進國에서는 國民申告資料와 併行하여 의료기관의 資料를 活用, 保健当局에서 作成하고 있음.

II. 우리나라의 人口動態 統計

1. 概況

○ 沿革

- 1937年 10月 朝鮮人口動態規則에 의거 戶籍法에 의한 申告 資料를 基礎로 作成 始作 (45年의 歷史)
- 1961年 7月 同業務가 內務部에서 經濟企劃院으로 이관 되면서 統計法 및 人口動態調查規則에 의거 作成.
- 制度上的 큰 變動 없이 現在까지 繼續.

○ 集計方法

- 戶籍法에 의한 出生, 死亡, 婚姻, 離婚申告書에 人口動態事項을 同時에 記載토록 하여 區·市·邑·面事務所에서 接受.
- 接受된 申告書 1枚를 經濟企劃院에서 蒐集.

○ 資料의 活用狀態

- 45年의 긴 統計生産歷史에도 불구하고 統計資料의 活用度 극히 低調.
- 最近에 死因統計를 비롯 人口動態 統計 報告書 作成.

人口動態統計資料 活用狀況

發刊時期	報 告 書 名	備 考
1965	韓國의 人口動態 統計	內部資料用
1968	1966年 人口動態 統計	"
1980	人口動態 申告現況	資料保管用
1982	人口動態 統計	"
1982	1980 死亡原因 統計 (50分類)	公表資料
1983	1981 死亡原因 統計 (307分類)	"

2. 問題点

o 申告率 低調

年度別 申告率 現況 (單位：%)

区 分		發 生 年 度					
		1960	1965	1970	1975	1980	1982
出 生	当 年 申 告 率	33.0	39.2	48.6	55.1	75.2	75.3
	3 年 累 積 申 告 率	...	56.1	77.3	91.3	94.9	...
	5 年 累 積 申 告 率	...	73.0	90.6	95.3
死 亡	当 年 申 告 率	42.4	45.7	55.8	68.9	86.2	82.4
	3 年 累 積 申 告 率	...	51.0	66.7	88.1	99.3	...
	5 年 累 積 申 告 率	...	59.7	70.3	90.4

o 지역신고에 의한 發生時期의 歪曲

出生, 死亡申告의 正確性 (單位：件)

確 認 內 容	出 生			死 亡		
	計	確 認 地 域		計	確 認 地 域	
		清 州	礼 山		清 州	礼 山
確 認 对 象 件 数	1,663 (100.0)	653 (100.0)	1,010 (100.0)	258 (100.0)	64 (100.0)	194 (100.0)
不正確한 申告件数	1,041 (62.6)	357 (54.7)	684 (67.7)	186 (72.1)	42 (65.6)	144 (74.2)
음력에 의한 기재	211 (12.7)	106 (16.2)	105 (10.4)	4 (1.6)	0 (0.0)	4 (2.1)
1 個月 以内의 차이	232 (14.0)	75 (11.5)	157 (15.5)	55 (21.3)	18 (28.1)	37 (19.1)
1 個月~1 年 以内의 차이	507 (30.5)	155 (23.7)	352 (34.9)	75 (29.1)	15 (23.4)	60 (30.9)
1 年 以上 차이	91 (5.5)	21 (3.2)	70 (6.9)	52 (20.2)	9 (14.1)	43 (22.2)
確 認 不 能	41 (2.5)	18 (2.8)	23 (2.3)	7 (2.7)	3 (4.7)	4 (2.1)

주 : 1. ()안의 숫자는 구성비임.

2. 1973.7.1 ~ 1978.6.30 사이에 발생한 출생·사망중 호적신고와의 대조가 가능한 건수에 대해 실제 출생·사망일자와 호적신고상의 출생·사망일자를 대조확인한 결과임.

o 嬰兒死亡者에 대한 不申告

嬰兒死亡者에 대한 申告態度

(單位:名)

設 問 內 容	応 答 結 果	
	清 州	礼 山
계	1,969 (100.0)	2,022 (100.0)
1.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동시에 하겠다.	186 (9.4)	136 (6.7)
2. 출생신고를 한 후 며칠후에 사망신고를 하겠다.	102 (5.2)	56 (2.8)
3.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둘다 하지 않겠다.	1,544 (78.4)	1,778 (87.9)
4. 기 타	133 (6.8)	46 (2.3)
5. 무응답	4 (0.2)	6 (0.3)

주 : 1. ()안의 숫자는 구성비임.

2. 1978년 인구동태 통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年度別 嬰兒死亡者의 申告現況 (單位:名)

구 분	발 생 년 도				
	77	78	79	80	81
推 定 死 亡 者 数	33,958 (100.0)	33,315 (100.0)	31,709 (100.0)	32,830 (100.0)	32,437 (100.0)
当 年 申 告 資 料	2,741 (8.6)	1,960 (6.0)	1,804 (5.6)
3 年 累 積 申 告 資 料	...	1,675 (5.0)	3,097 (9.8)
5 年 累 積 申 告 資 料	2,254 (6.6)

주: () 안의 숫자는 추정사망자수에 대한 신고율임.

o 標準死因分類에 의한 死亡原因 記載 疎忽

年度別 死亡原因 記載現況 (單位:名)

구 분	발 생 년 도	
	'80	'81
推 定 死 亡 者 数	256,972 (100.0)	255,687 (100.0)
申 告 死 亡 者 数	252,072 (98.1)	216,547 (84.7)
死 因 分 類 可 能	113,425 (44.1)	167,070 (65.3)
醫 師 診 断	54,617 (21.3)	64,045 (25.0)

주: 신고사망자수는 2年累積件數임.

Ⅲ. 改善方案

1. 申告資料의 正確度 提高方案

着眼事項	現況 및 問題點	改善方案	
1) 申告內容 (項目) 및 申告書提出 枚數	○ 現行 申告項目 - 申告項目의 過多 - 一部 有用項目의 누락	○. 申告項目의 縮少 또는 配列 調整 - 人口動態項目中 削除可能項目 出生→父母의 教育程度 및 職業 死亡→教育程度 婚姻→成婚過程, 婚姻場所, 職 業, 教育程度 - 申告負擔을 줄이기 為한 戶 籍項目의 縮少可能 檢討 - 項目配列 調整 신고서 뒷면에 있는 人口動 態 項目을 앞면으로 配列 調整 ○. 出生時 體重 및 離婚時의 부양대상자녀수등 有用性있는 項目의 追加與否 檢討 ○. 申告書 提出枚數 調整 - 申告場所에 關係없이 1枚로 統一 - 行政上 必要한 枚數는 復寫 하여 使用	
	現行申告項目		
	區分		計 戶籍 人口動態
	出生		27 20 7
	死亡		27 21 6
	婚姻		37 31 6
	離婚		40 35 5
	○ 申告書提出枚數		
	區 分		申告場所 枚數
	出生및 死 亡		本籍地 2 住所地 3
婚 姻	本籍地 3 住所地 4		
離 婚	本籍地 3 住所地 4		
- 失期申告時 1枚追加			

着眼事項	現況 및 問題點	改 善 方 案
2) 申告節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申告便宜를 爲한 制度的裝置 未治 ○. 申告內容의 正確性을 確保하기 爲한 裝置 未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接受証 發給規定 (호적법 50 조 ③항) 이 있으나 제대로 履行되지 않고 있음. - 身元不明者의 死亡은 경찰관이 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申告書 용지 配付処의 多邊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区·市·邑·面 → 区·市·邑·面 統·里長 보건소, 병원, 조산원, 장의사, 예식장 ○. 申告節次의 便宜函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신고 및 휴일 (야간) 申告 接受態勢 強化 - 口述申告制의 強化 - 統·里長에 의한 代理申告等 申告便宜提供 強化 ○. 申告畢証 (接受証) 發給의 徹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申告畢証의 機能</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申告人 → 申告義務達成에 대한 滿足感 賦与 ② 擔當公務員 → 正確한 業務處理을 促求하는 心理的 効果 ③ 기 타 → 申告畢証을 通하여 關聯制度와의 連繫을 強化할수 있음

着眼事項	現況 및 問題點	改善方 案
<p>3) 聯関制度와 의 關係</p>	<p>屍調書를 작성 澈 부하여 지체없이 死亡地의 市·邑· 面長에게 報告토 록 規定</p> <p>○. 申告書記入은 黑 色에 限하며 숫 자는 漢字로 記 入토록 規定</p> <p>○. 申告率의 提高및 申告內容의 正確 을 기하기 위하 여 人口動態事項</p>	<p>- 申告人의 청구에 拘애받지 않 고 行政機關에서 自發的으로 發給.</p> <p>- 手数料의 賦課를 撤廢</p> <p>○. 事故에 의한 死亡者, 棄兒 및 行旅病者中 身元不明者에 대한 人口動態申告 強化</p> <p>○. 保健所, 病院, 助産員, 禮式場, 葬儀社等 人口動態事項과 관련 있는 기관에 申告義務 賦与</p> <p>○. 保健所가 死亡原因 記載에 参 与할수 있는 制度的 裝置 마련</p> <p>○. 申告書 記載方法의 簡素化</p> <p>- 숫자記入에 아라비아숫자도 併用</p> <p>- 청색볼펜 기입 併用</p> <p>○. 埋·火葬 申告時 申告畢証 澈 부 義務化</p> <p>- 暗埋·火葬의 단속 철저</p> <p>○. 의료보험조합의 分娩 및 葬禮</p>

着眼事項	現況 및 問題点	改 善 方 案
4) 醫療人 및 一線職員에 대한 教育	<p>과 관련있는 다른 制度와의 連繫 未洽</p> <p>o. 醫療人에 대한 教育</p> <p>- 醫療人은 死亡診 断書 作成 等を 通하여 人口動態 特히 死亡原因統 計 生産에 間接 的으로 参与</p> <p>- 死亡原因의 分類에 關한 教育은 醫務記錄士協會에 서 “韓國標準疾病 死因分類” 책자를 發刊, 各 病·醫</p>	<p>補助金 支給時 申告畢証 첨부</p> <p>o. 生活保護對象者의 葬禮補助時 申告畢証 첨부</p> <p>o. 出生, 死亡과 관련된 保險金 支給時 申告畢証 첨부</p> <p>o. 少兒科病院등 新生兒 진료기관 의 진료카-드에 出生申告畢証 의 接受番号 記入</p> <p>o. 醫科大學 教育科目에 死因分類 內容을 擴大 強化</p> <p>o. 醫師試驗에 死因分類內容 包含</p> <p>o. 漢醫師에 대한 教育 實施</p>

着眼事項	現況 및 問題點	改 善 方 案
	<p>院에 普及하고있는데 그치고 있음.</p> <p>- 漢醫士에 대한 教育은 거의 實施되지 않고 있음.</p> <p>○. 一線擔當職員에 대한 教育</p> <p>- 指針書에 의해 業務遂行</p> <p>- 戶籍事務의 경우 管轄地方法院에 의해 定期的인 教育을 實施하고 있는데 反하여 中央統計作成機關에 의하 直接教育 機會 없음.</p>	<p>○. 地方法院에 의한 教育時 人口 動態教育 併行實施</p> <p>○. 不實記載資料에 대한 現地 質 疑 照會의 強化</p>

着眼事項	現況 및 問題點	改 善 方 案												
5) 弘 報	<u>人口動態申告書의 不實記載 狀況</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申告 年度</th> <th style="width: 40%;">申告件數</th> <th style="width: 50%;">不實記載 件數 (%)</th> </tr> </thead> <tbody> <tr> <td>1980</td> <td>1,698,847</td> <td>5,436(0.3)</td> </tr> <tr> <td>1981</td> <td>1,657,861</td> <td>5,695(0.3)</td> </tr> <tr> <td>1982</td> <td>1,551,556</td> <td>5,273(0.3)</td> </tr> </tbody> </table>		申告 年度	申告件數	不實記載 件數 (%)	1980	1,698,847	5,436(0.3)	1981	1,657,861	5,695(0.3)	1982	1,551,556	5,273(0.3)
	申告 年度		申告件數	不實記載 件數 (%)										
	1980		1,698,847	5,436(0.3)										
	1981		1,657,861	5,695(0.3)										
1982	1,551,556	5,273(0.3)												
<p>○. 間歇的인 申告強 調期間 設定으로 지연신고 整理</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申告強調期間設定 의 弊端 </div>														
<p>① 지연申告分이 一時에 集中申 告되므로 業務 過重에 따른 行政處理上의 不正確 招來</p> <p>② 過台料 免除時 不申告者가 強 調期間때 까지 기다리는 惰性 조장</p>														

着眼事項	現況 및 問題點	改善方 案
6) 申告督勵	<p>③ 과태료 賦課時 發生時期를 歪曲 申告 (特히 死亡의 發生時期) 할 可能性이 높음.</p> <p>○. 申告催告制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区·市·邑·面長은 申告不履行者를 알 때에는 申告催告를 하여야 하며, - 催告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에 對해서는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規定 <p>○. 實際로는 申告催告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p>	<p>○. 催告制度의 強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家族計劃要員의 情報活用 - 經濟企劃院에서 催告狀況을 確認할수 있는 制度的 裝置 마련. <p>○. 申告接受場所를 現居住地 所在 区·市·邑·面으로 統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籍地의 戶籍簿는 住所地에서 移送받은 申告書에 의해 處理 - 長點 <p>① 催告制度를 効率的으로 遂行할수 있음.</p> <p>② 申告書의 現地確認이 容易</p> <p>③ 申告書 枚數를 줄일수 있</p>

着眼事項	現況 및 問題点	改 善 方 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理由</p> </div> <p>① 申告不履行者를 把握할수 있는 時間 및 人力 不足</p> <p>② 申告는 本籍地 및 住所地에서 同時에 할수 있으므로 申告不履行与否의 確認이 困難</p>	<p>어 申告便宜 図謀</p> <p>④ 一線機關의 業務評價 可能</p>
7) 罰則規定	<p>○ 過怠料 内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申告懈怠時: 5천원 - 催告後懈怠時: 1만원 <p>○ 過怠料 賦課는 地方法院의 非訟事件 判決에 의하여 決定되고 있음.</p>	<p>○ 賦課節次</p> <p>管轄 地方法院의 非訟事件에서 区·市·邑·面의 通告処分으로 改正</p> <p>○ 段階的 罰金賦課 根拠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当年申告와 翌年申告의 区分 - 催告後 不申告에 관한 過怠料 賦課規定의 活用 強化 <p>○ 現 過怠料의 大幅 引上 檢討</p>
8) 一線擔当 機關	<p>○ 人口動態業務專擔 一線機關의 脆弱</p>	<p>○ 人口動態業務에 關한 一線機關으로 市·郡 保健所 參與</p>

着眼事項	現況 및 問題點	改善方案
<p>9) 中央統計 作成機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申告不履行者에 대한 催告業務 疎忽 - 申告內容의 事實確認 疎忽 <p>o. 戶籍事務擔當機關 및 資料活用機關 과 乖離되어 있어 効率的인 業務推進 困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要機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擔当地域의 完全申告 達成 ② 申告書 內容(發生時期, 死亡原因等)의 確認 - 參與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家族計劃要員에 의한 出生, 死亡 情報와 申告書 對照 ② 現行 催告制度의 活性化를 통한 現地申告 督勵 強化 ③ 實際發生時期와 申告書上의 發生日字 一致 ④ 標準分類에 의한 死因記載 強化 <p>o. 現地 指導機能의 強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口動態事務에 대한 統制 強化 - 法院과 合同 指導 考慮 <p>o. 有관機關과의 連繫 強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制度的인 裝置 마련 - 人口動態改善協議會等 常設協議體의 構成과 運營方案 考慮

着眼事項	現況 및 問題點	改善方案												
10) 戶籍事務 管掌機構	<p>○. 申告接受機關(區·市·邑·面)에 대한 行政統制權 分散</p> <table border="1" data-bbox="497 703 791 1025"> <thead> <tr> <th>統制權</th> <th>管掌機關</th> </tr> </thead> <tbody> <tr> <td>人事 豫算權</td> <td>內務部</td> </tr> <tr> <td>戶籍事務 監督權</td> <td>管轄地方 法院</td> </tr> <tr> <td>統計作成權</td> <td>經濟企劃院</td> </tr> </tbody> </table> <p>- 統制權의 分散으로 業務能率 低下</p> <p>- 統計業務 比重의 相對的인 弱화</p>	統制權	管掌機關	人事 豫算權	內務部	戶籍事務 監督權	管轄地方 法院	統計作成權	經濟企劃院	<p>○. 戶籍事務의 監督, 人事, 豫算權의 一元化를 爲하여 現行 戶籍事務를 法院에서 內務部로 移管 考慮.</p> <table border="1" data-bbox="804 703 1294 1375"> <thead> <tr> <th>理由</th> </tr> </thead> <tbody> <tr> <td>① 內務部에서 申告接受機關의 服務監督, 人事, 豫算權을 가지고 있어 行政効率을 높일수 있음</td> </tr> <tr> <td>② 戶籍事務는 國民의 身分에 관한 公證事務이므로 그 性質上 行政府의 業務임</td> </tr> <tr> <td>③ 保守的인 사무관리체제를 탈피하고 能動的이고 現實適應的인 行政 遂行을 爲해서는 未來志向的인 行政府가 效果的임</td> </tr> </tbody> </table>	理由	① 內務部에서 申告接受機關의 服務監督, 人事, 豫算權을 가지고 있어 行政効率을 높일수 있음	② 戶籍事務는 國民의 身分에 관한 公證事務이므로 그 性質上 行政府의 業務임	③ 保守的인 사무관리체제를 탈피하고 能動的이고 現實適應的인 行政 遂行을 爲해서는 未來志向的인 行政府가 效果的임
統制權	管掌機關													
人事 豫算權	內務部													
戶籍事務 監督權	管轄地方 法院													
統計作成權	經濟企劃院													
理由														
① 內務部에서 申告接受機關의 服務監督, 人事, 豫算權을 가지고 있어 行政効率을 높일수 있음														
② 戶籍事務는 國民의 身分에 관한 公證事務이므로 그 性質上 行政府의 業務임														
③ 保守的인 사무관리체제를 탈피하고 能動的이고 現實適應的인 行政 遂行을 爲해서는 未來志向的인 行政府가 效果的임														
11) 法令	<p>○. 申告와 관련된 法令</p> <table border="1" data-bbox="497 1563 791 1823"> <thead> <tr> <th>關係法令</th> <th>法目的</th> </tr> </thead> <tbody> <tr> <td>戶籍法</td> <td>戶籍管理</td> </tr> <tr> <td>住民登錄法</td> <td>행정사무의 摘正</td> </tr> <tr> <td>人口動態 統計規則</td> <td>統計作成</td> </tr> </tbody> </table>	關係法令	法目的	戶籍法	戶籍管理	住民登錄法	행정사무의 摘正	人口動態 統計規則	統計作成	<p>○. 戶籍法의 改正 또는 申告에 關한 單一法 制定 檢討.</p> <table border="1" data-bbox="804 1563 1294 1823"> <thead> <tr> <th>基本方向</th> </tr> </thead> <tbody> <tr> <td>① 戶籍事務의 감독, 人事, 豫算 權의 一元化</td> </tr> <tr> <td>② 신고에 따른 國民편의 제고</td> </tr> </tbody> </table>	基本方向	① 戶籍事務의 감독, 人事, 豫算 權의 一元化	② 신고에 따른 國民편의 제고	
關係法令	法目的													
戶籍法	戶籍管理													
住民登錄法	행정사무의 摘正													
人口動態 統計規則	統計作成													
基本方向														
① 戶籍事務의 감독, 人事, 豫算 權의 一元化														
② 신고에 따른 國民편의 제고														

着眼事項	現況 및 問題點	改 善 方 案
	<p>○. 各各 相異한 目的을 갖고 있으나 重複條項이 많고 行政力의 낭비와 國民에게 過重한 申告負擔을 주고 있음</p>	<p>③ 사무관리의 효율성 제고 ④ 인구동태 통계업무 비중 강화</p>

2. 分析機能의 活性化 方案

着眼事項	現況 및 問題點	改 善 方 案
<p>1) 人口動態 資料의 整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整備對象 資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3 年 ~ 1969 年 (컴퓨터에 入力 되기 前) 의 手集計 資料 ○ . 保管型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手集計에 依한 統計表 ○ . 保管資料의 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 卷 (約 13,500 페이지) ○ . 整備의 必要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資料의 滅失 防止 - 資料의 活用度 提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政府記錄保管所의 協助下에 全 資料를 ฟิล름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所要豫算 : 35 mm 필름 40 통 所要 40 개 × 3,500 원 = 140,000 원 ○ . 東西文化센터 (E.W.C) 와의 協助下에 同資料의 分析 試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口動態 特히 死亡原因의 趨勢 把握 可能 - 分析技法 및 能力 習得
<p>2) 研究機關 및 國際 機關과의 協調</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地域別 人口推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3 年 本院 主要事業 - 人口保健研究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人口保健研究院 과의 協力 強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PH 직원의 당원 파견근무 검토 - 当局 職員의 集中 投入

着眼事項	現況 및 問題點	改善方 案																																																
<p>3) 人員 및 資質</p>	<p>(KIPH) 과 共同으로 市·道別 人口推計 作業中</p> <p>○. ESCAP 主管 地域別 出產力 分析 研究에 既 參與</p> <p>－ 專門 分析 要員의 不足, 語學 能力의 未 洽 等으로 研究 実績 不振</p> <p>○. 醫務 記錄士 (死因 分類 專門 要員) 등 特殊 專門 人力 所要</p> <p>○. 人口 動態 統計 專門 人力 不足 (出產 力, 死亡 力, 死因 等 人口 및 保健 統計 關聯)</p>	<p>○. 研究 機關 (東亞大 人口 問題 研究所 等) 과의 共同 研究 摸索</p> <p>○. ESCAP 과의 協力 強化</p> <p>○. 既存 定員의 完全 充員 및 增員 配置</p> <p style="text-align: center;">最少 所要 人力</p> <table border="1" data-bbox="821 1388 1273 1706"> <thead> <tr> <th>擔當 業務</th> <th>現 員</th> <th>所 要 人 員</th> <th>備 考</th> </tr> <tr> <td>計</td> <td>6</td> <td>14</td> <td></td> </tr> </thead> <tbody> <tr> <td>總 括</td> <td>1</td> <td>1</td> <td>一般 統計 要員</td> </tr> <tr> <td>出 產 力 分 析</td> <td>-</td> <td>2</td> <td>人口 統計 專門 要員</td> </tr> <tr> <td>死 亡 力 分 析</td> <td>-</td> <td>2</td> <td>保健 統計 專門 要員</td> </tr> <tr> <td>死 因 分 析</td> <td>1</td> <td>1</td> <td>"</td> </tr> <tr> <td>死 因 符 號 記 入</td> <td>-</td> <td>1</td> <td>醫務 記錄 士</td> </tr> <tr> <td>人 口 推 計</td> <td>-</td> <td>2</td> <td>人口 統計 專門 要員</td> </tr> <tr> <td>프로그래머</td> <td>-</td> <td>1</td> <td>"</td> </tr> <tr> <td>C D S</td> <td>1</td> <td>1</td> <td>一般 統計 專門 要員</td> </tr> <tr> <td>人 口 動 態 申 告</td> <td>2</td> <td>2</td> <td>"</td> </tr> <tr> <td>人 口 移 動</td> <td>1</td> <td>1</td> <td>"</td> </tr> </tbody> </table>	擔當 業務	現 員	所 要 人 員	備 考	計	6	14		總 括	1	1	一般 統計 要員	出 產 力 分 析	-	2	人口 統計 專門 要員	死 亡 力 分 析	-	2	保健 統計 專門 要員	死 因 分 析	1	1	"	死 因 符 號 記 入	-	1	醫務 記錄 士	人 口 推 計	-	2	人口 統計 專門 要員	프로그래머	-	1	"	C D S	1	1	一般 統計 專門 要員	人 口 動 態 申 告	2	2	"	人 口 移 動	1	1	"
擔當 業務	現 員	所 要 人 員	備 考																																															
計	6	14																																																
總 括	1	1	一般 統計 要員																																															
出 產 力 分 析	-	2	人口 統計 專門 要員																																															
死 亡 力 分 析	-	2	保健 統計 專門 要員																																															
死 因 分 析	1	1	"																																															
死 因 符 號 記 入	-	1	醫務 記錄 士																																															
人 口 推 計	-	2	人口 統計 專門 要員																																															
프로그래머	-	1	"																																															
C D S	1	1	一般 統計 專門 要員																																															
人 口 動 態 申 告	2	2	"																																															
人 口 移 動	1	1	"																																															

着眼事項	現況 및 問題点	改 善 方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業務遂行資質具備 人力不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専門教育 및 語学教育 強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国内外 専門家の 招聘 教育 実施 - 既存人員에 对한 国内外 委託 教育 (専門教育 또는 語学教育) ○. 醫務記録士에 对한 定員確保 및 報酬 調整 ○. 電算터미널설치 및 電算处理要員 配置 考慮 ○. 直轄 研究機關 設置 檢討

IV. 改善事業에 따른 關係部處

事業名	內 容	關 係 部 處
1. 申告項目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申告項目의 縮少, 追加 및 配列調整 o. 申告書 提出枚數 調整 	法院行政處
2. 申告節次의 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申告書 用紙 配付處의 多邊化 o. 우편신고 및 休日(야간) 申告 接受態勢 強化 o. 統·里長에 의한 代理申告 및 口述申告等 申告 便宜 提供 強化 o. 申告畢証(接受証) 發給의 徹底 o. 身元不明者에 대한 死亡申告 節次 強化 o. 保健所, 病院, 助産員, 禮式場, 葬儀社等 人口動態事項과 關聯있는 機關에 申告 義務 賦与 o. 保健所의 死亡原因 記載 參與 	保社部, 市道 法院行政處, 內務部, 市道 法院行政處, 內務部, 市道 法院行政處, 內務部, 市道 內務部(治安本部), 市道 法院行政處, 保社部 保社部, 市道

事業名	內 容	關 係 部 處
3. 聯関制度 와의 連 繫 強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申告書 記載方法의 簡素化 o. 埋·火葬 申告時 申告畢証 첨부 義務化 o. 의료보험조합의 分娩 및 葬 禮補助金 支給時 申告畢証 첨부 義務化 o. 生活保護對象者의 葬禮補助 時 申告畢証 첨부 o. 保險金 支給時 申告畢証 첨부 o. 新生兒 진료기관의 진료카 드에 신고필증의 接受番号 記入 	<p>法院行政處, 市道</p> <p>內務部, 市道</p> <p>保社部, 의료보험조합</p> <p>保社部, 市道</p> <p>財務部, 保險協會</p> <p>保社部, 病院協會</p>
4. 醫療人및 一線職員 에 대한 教育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의과대학 教育科目의 死因 分類內容 強化 o. 醫師試驗에 死因分類內容 包含 o. 漢醫師에 대한 教育 o. 一線職員 教育 	<p>保社部</p> <p>保社部</p> <p>保社部, 漢醫師協會</p> <p>法院行政處, 地方法院</p>

事業名	內 容	關 係 部 處
5. 弘 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保健所, 病院, 助産員, 葬儀社, 禮式場等 人口動態事項과 關聯있는 기관에 신고 안내문 및 弘報物 부착 ○. 定期的인 弘報期間 設定 	<p>保社部, 市道</p> <p>法院行政處, 內務部, 市道</p>
6. 申告督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催告制度의 強化 	<p>法院行政處, 市道</p>
7. 罰則規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過怠料 賦課節次의 改善 ○. 過怠料의 調整 	<p>法院行政處, 內務部, 市道</p> <p>法院行政處</p>
8. 一線機關의 強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申告書 檢討機關으로 保健所 活用 	<p>保社部, 市道</p>
9. 統計作成機關의 機能強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地 指導機能의 強化 ○. 人口動態改善 協議會 運營 	<p>法院行政處, 地方法院</p> <p>法院行政處, 保社部, 內務部, 關係專門家</p>
10. 戶籍事務의 管掌機構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戶籍事務의 監督, 人事, 豫算權의 一元化를 為한 管掌機構 調整 	<p>法院行政處, 內務部</p>

事業名	內 容	關 係 部 処
11. 法令의 改正	o. 戶籍法의 改正 또는 申告 에 關한 單一法 制定	法院行政處, 內務部
12. 人口動態 資料의 整備	o. 1953年~1969年間の 人口 動態 手集計 資料의 필류 化 및 分析	政府記錄保管所, 東西文 化센터
13. 出産力 分析	o. 1970~1980年間の 센서 스 資料에 依한 出産力 分析	E SCAP
14. 地域別 (市道) 人口推計	o. 市道別 人口推計作業의 推 進 強化	人口保健研究院

參 考 資 料

1. 人口動態統計改善을 為한 主要事業推進經過
2. 人口動態統計改善에 관한 國內外 勸告內容
3. 日本의 人口動態統計 作成 概要
4. 關係法令
 - 가. 戶籍法 (拔萃)
 - 나. 統計法
 - 다. 人口動態調査 規則

1. 人口動態統計改善을 爲한 主要事業推進經過

事業名	實施時期	事業內容 및 結果									
1) 標本調査	1954年 10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國의 約 1/200 有意標本 (都市, 農村, 海岸, 산간 등 特性別 有意標本) ○ 他計式 面接調査 ○ 調査結果 다음과 같이 算出되어 結果的으로 成功치 못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區 分</th> <th>推 定 值</th> <th>調 查 值</th> </tr> </thead> <tbody> <tr> <td>出 生 率</td> <td>4.5 % 以上</td> <td>3.0 %</td> </tr> <tr> <td>死 亡 率</td> <td>1.5 % 以上</td> <td>0.6 %</td> </tr> </tbody> </table>	區 分	推 定 值	調 查 值	出 生 率	4.5 % 以上	3.0 %	死 亡 率	1.5 % 以上	0.6 %
	區 分	推 定 值	調 查 值								
出 生 率	4.5 % 以上	3.0 %									
死 亡 率	1.5 % 以上	0.6 %									
	1963 ~ 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初의 改善努力 ○ 全國의 約 1/100 標本 (經濟活動調査區 利用) ○ 地方事務所 職員에 의한 他計式 面接調査 ○ 分期別 年 4回 調査 ○ 調査管理面의 徹底 (事後 檢証調査, 応答態度調査, 調査員 訓練 監督 強化等 調査資料 蒐集) 에도 不拘하고 推定件數에 未達하는 調査資料 蒐集 ○ 1969年 2/4 分期 以後 中斷 									

事業名	實施時期	事業內容 및 結果
	<p>1973 ~ 1976</p> <p>1977 ~ 198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斷事由:(ㄱ) 非標本 誤差보다 標本誤差에 責任이 있다는 結論 到達 (ㄴ) 適正規模 標本과 管理面의 改善 以後에 再開토록 暫定 措置 o 1973年 2/4 分期부터 再開 o 全國의 $\frac{1}{500}$ 標本 (165 個 調査區의 約 12,000 家口) o 地方事務所 職員에 의한 他計式 面接調査 o 内部資料로 活用 o 1975年 센서스 調査區를 基礎로 標本 交替 o 全國의 $\frac{1}{349}$ 標本 (427 個 調査區의 約 23,000 家口) o 地方事務所 職員에 의한 他計式 面接調査 o '80年 報告書 發刊公表 (其他 年度 資料는 内部資料로 活用) - 1978年과 1979年 사이에 實施된 重複調査의 影響임

事業名	實施時期	事業內容 및 結果
2) 对照調査	1982 ~ 現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1980年 센서스 調査區를 基礎로 標本 交替 o 全國의 $\frac{1}{547}$ 標本 (547個 調査區의 약 15,500 家口) o 地方事務所 職員에 의한 他計式 面接調査 o '81年 以後 內部資料로 活用
	1965年 10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忠南 大德郡 全体를 對象으로 實施 o 申告資料와 調査資料를 对照, 比較의 良好한 資料 蒐集 o 对照作業의 困難 및 再確認上의 어려움으로 1회에 그침 o E.S. Marks 博士 繼續調査 勸奨
3) 人口動態 調査改善 協議會設置	1959年 10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調査統計局에 “人口動態 調査 改善 研究 協議會” 設置 o 학계, 법조계, 關係部處人士를 構成員으로 運營 o 每月 會合 o 改善計劃 推進에 많은 寄与 o 統計委員會의 設置에 따라 廢止
4) 年末 常住 人口調査와 의 同時調査	1959年 年末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常住人口調査票에 出生, 死亡欄 新設 他計 調査 實施

事業名	實施時期	事業內容 및 結果
5) 申告強調 期間設定	1961.8 ~ 10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過小 調査資料로 判定 (調査員에 의한 탁상조사 結果) ○ 5.16 革命直後 實施하여 큰 成果 (過怠料 免除) ○ 前年同期間 對比 1,034 % 申告 (213,478 件 → 2,208,502 件)
	1969. 12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口動態調査改善 3年計劃의 일환으로 實施 (過怠料 免除) ○ 前月對比 1,300 % 申告
	1970. 12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口動態調査改善 3年計劃의 一環으로 實施 (過怠料 免除) ○ '69年 強調期間의 影響으로 總申告件 數는 크게 增加하지 않았으나 当年 申告率은 向上
	1971. 12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口動態調査改善 3年計劃의 一環으로 實施 (過怠料 免除) ○ 前年の 強調期間 影響으로 큰 成果 는 없었으나 当年 申告率은 若干 增加
	1976. 6~7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住民登錄制度의 實施 ('75.8.24) 에 따라 戶籍에 記載하게 되는 住民登錄 番號의 整理 不振을 打開하기 爲하여 法院行政処 主管으로 實施

事業名	實施時期	事業內容 및 結果
6) 人口動態調查事務改善要綱施行		(過怠料 免除)
	1977. 10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月對比 437% 申告 ○ 戶籍 및 人口動態申告에 대한 弘報의 一環으로 實施 (過怠料 賦課) ○ 前月對比 191% 申告
	1980.12 ~ 19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企劃院 主管으로 法院行政處, 內務部 共同으로 實施 (過怠料 賦課) ○ 前月對比 254% 申告
	1959年 12月1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各市·道에 人口動態調查事務改善要綱 示達 ○ 主要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區·市·邑·面長은 里·洞·班長의 協調로 每月 管内 未申告者를 巡廻 訪問後 發見, 申告 督勵 (ㄴ) 每月末 管内 發生者 名單 및 未申告者 名單을 作成하고 未申告者에 申告 督勵 (ㄷ) 每月末 管内 發生件數 및 未申告者數를 中央에 報告 (ㄹ) 區·市·邑·面長은 每月 前月 未申告 義務者에게 處理 措置 ○ 里·洞·班長의 非協調로 形式化되어 中止

事業名	実施時期	事業内容 및 結果
7) 管内 実地 發生件數 報告措置	1959年 12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内務部長官 特別指示 ○ 全國의 各 洞·里·班長에게 申告與 否와 關係없이 1959.9 ~ 11月의 3個月間 發生 件數(出生·死亡) 報告 ○ 集計結果 出生率 2.9%, 死亡率 0.8%로 過少 報告: 調査費가 없이 單순한 報告지시에 該當해 기인
8) 示範地域 設定	1963年 9月15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대전시 삼성동, 대덕군 유성면, 공주군 공주읍 선정 ○ 主要活動 内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人口動態調査 事務 改善要綱實施 徹底 (ㄴ) 市郡 保健所에서 内容檢査後 發送 (ㄷ) 初期 家口別 카렌다 配付 實施 ○ 初期段階에서는 活潑하였으나 期間 經過에 따라 退色 形式化
9) 外國諮問官 招請	1966 ~ 1973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招請目的: 人口動態統計의 不振原因 및 改善計劃의 樹立과 推 進上의 技術的 諮問

事業名	実施時期	事業内容及結果		
10) 人口動態調査改善三年計劃	1970 ~ 1972 年の 3 年計劃	諮問官 招請内容		
		招請時期	諮問官	諮問
		1966	Mr. Wyne (美国人口 協会)	人口動態改善
		1970.7 ~ 10 月	H. S. Shryock and Eli. S. Marks	人口動態改善 및 人口動態 標本 調査
		1971.7 ~ 12 月	Mr. D. L. Huxtable (AID 支援)	人口動態改善
		1973.3.8 ~ 3.30	Eli. S. Marks	人口動態改善 및 人口動態 標本 調査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主要勸告内容 参考資料 “ 2. 人口動態統計改善에 관한 国内外 勸告内容 ” 参照 o 目標 : 国民適期 完全申告 制度의 基礎 確立 o 計劃確定時期 및 方法 1968.2.15 經濟諮問會議 議決 		

事業名	實施時期	事業內容 및 結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資金支援 : USAID ○ 主要事業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申告 態度 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強力한 啓蒙宣傳으로 適期 完全申告 習性造成 및 生活化 - 弘報方法 및 実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啓蒙宣傳 映畫 巡廻上映 (映畫車 7台 動員) • 포스타 6萬枚 全國에 配付 揭示 • 申告 勸誘物 100萬枚 全國 班常會에 配付 • 全國의 綜合病院, 産婦人科病院, 助産所等에 포스타, 標語, 申告 勸誘物 配付 (㉡) 制度面의 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法院 行政處等 關係機關과 協調 하에 申告手續 節次等의 郵便化를 위한 法令改正 推進 - 主要実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口動態申告書를 '70年1月1日부터 戶籍申告書와 같은 用紙에 一元化

事業名	實施時期	事業內容 및 結果
		<p>(ㄷ) 運營面의 改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事務管理의 改善, 裝備補強, 地方機關 訓練 및 補助 強化, 有關係機關과의 協調 強化 - 主要実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國 1,700 個 綜合病院, 産婦人科, 禮式場, 助産員으로 하여금 每月 發生者 리스트 提出토록 措置 • 埋·火葬 申告者에게 死亡申告를 履行토록 措置 • 暗埋·火葬의 徹底한 團束 • 人口動態申告 強調期間 設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12月 (1 個月間) ○ 申告実績 <ul style="list-style-type: none"> '69年 12月의 申告強調期間 影響으로 總申告率은 크게 增加하지 않았으나 当年 申告率은 顯著히 增加하였음 <p>(ㄹ) 補助調査 實施</p>

事業名	実施時期	事業内容及結果
11) 人口動態 統計改善 事業	1978.10 ~ '7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目的 人口動態申告의 實態把握 및 改善方案 摸索 o 事業概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事業示範地域 選定：忠南・禮山， 忠北・清州 (2) 基礎調査 実施：1978.8.4 ~ 25 (3) 諸般 改善施策 実施 (4) 改善施策 成果 測定 o 諸般 改善施策 内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地方 上位職 公務員에 對한 教育 訓練(1979.2 洞・邑・面長會議) (2) 地方戶籍擔当 公務員의 教育 (每2個月마다 召集教育 實施) (3) 地方戶籍擔当公務員의 增員運營 (2名) (4) 地方行政 補助要員(統・里長 및 새마을指導者) 活用 (長官이 人口動態 改善 要員으로 任命) (5) 地方保健要員 및 家族計劃 要員의 活用(清州 15名, 禮山 20名)

事業名	実施時期	事業内容 및 結果
		<p>(6) 申告促進을 為한 地方官署의 弘報 活動 支援</p> <p>(7) 文盲者를 為한 無料代書所 運營</p> <p>(8) 遲延申告에 對한 過怠料의 嚴格한 適用</p> <p>(9) 申告의 重要性 認識을 為해 申告 畢者에 申告証 發給</p>

2. 人口動態統計改善에 관한 國內外 勸告內容

가. 유엔의 主要勸告內容

- 人口動態統計의 確固不動한 基礎는 申告記錄(資料) 이어야 한다.
- 法的 強制性을 지닌 申告法을 制定하여야 한다.
- 不履行에 대한 徹底한 処罰과 強制措置가 있어야 한다.
例) 美國의 境遇 申告違反時 過怠料 100\$, 申告를 怠慢한 醫師 또는 埋葬 執行官을 入件措置
- 身分登錄以外에 統計目的도 達成될 수 있도록 하는 政府 勞力이 있어야 한다.
- 人口動態 管掌機構는 中央統計機構에서 管掌하는 것이 有利하다.
- 申告容易性을 考慮하여야 하며 申告場所가 近距離이어야 한다.
- 休일은 勿論 철야 接受態勢를 갖추어야 한다.
- 擔當의 適正 業務量, 巡廻指導 業務 促進, 명심서 作成, 事前 事務監督의 徹底, 申告費用의 免除, 失期申告의 分析後 對策마련, 他 資料와 隨時 檢証 등이 考慮되어야 한다.

나. 諮問官의 主要勸告內容

- 1) Mr. Wyne (美國人口協會)의 勸告(1966年 人口動態 統計 諮問官으로 來韓)

- 人口動態改善委員會를 設置하여 運營한다.
- 國民에 對한 弘報를 強化한다.
- 示範地域 設定과 이의 全國的 擴大가 必要하다.
- 戶籍, 住民登錄 行政等 關聯 行政活動의 改善 強化가 要求된다.
- 申告督勵義務 또는 申告義務를 里·統長에게 賦與하여야 한다.
- 國際機關과의 協力強化가 要求된다.
- 關聯된 業務에 從事하는 職員間의 緊密한 協助關係가 維持되어야 한다.

2) Mr. D.L. Huxtahle 의 勸告 (1970年 AID資金支援에 의해 人口動態統計諮問官으로 來韓)

가) 長期計劃

- 現行 戶籍申告 法規를 廢止하고 戶籍申告, 動態申告, 住民登錄申告等を 總括적으로 規定한 새로운 法規를 制定하여야 한다.
- 모든 權限과 責任을 單一機關으로 集中(司法府→ 行政府) 시켜야 한다.
- 人口動態課를 設置하여야 한다.
- 獨立된 一線機關의 設置 및 申告體系의 確立이 要求된다.
- 里·統長, 醫療要員, 葬儀社, 禮式場에 申告義務를 賦與하여야 한다.

- 申告書式の改正이 必要하다.
- 法規의 強力한 施行이 要求된다.
- 國民에 대한 弘報를 強化하여야 한다.

나) 短期計劃

- 人口動態 標本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3) Marks and Shryock 의 勸告 (1970年 및 1973年 人口動態 標本調査 諮問官으로 來韓)

- 申告制度의 改善이 長期計劃이므로 補完調査로서의 特別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 特別調査는 繼續調査로서 申告資料와 每月 對照, 補完해 가야 한다. (調査方法은 Matching Survey 活用)
- 示範地域을 強化 漸次 擴大하여야 한다.
- 法定申告期間, 手續節次, 罰則 適用等の 運營面을 強化하여야 한다.
- 經濟企劃院의 人口動態業務 管掌機構를 擴大, 強化하고 人力을 補強하여야 한다.
- 家族計劃要員, 保健要員 等を 活用하여야 한다.

다. 人口問題研究所의 建議

1) 1967年 “人口動態統計 改善方案” 作成

2) 主要内容

가) 改善方向

- 國民의 申告意識 昂揚
- 申告와 蒐集業務上의 行政的 強化

- 現行 申告制度의 改善

나) 改善方案

- 申告記載 項目을 簡素化한다.
- 申告書 記載方法을 편의화한다.
- 申告節次를 簡素化한다.
- 里·洞·班長의 申告監督, 督勵 義務를 賦与한다.
- 暗埋·火葬을 徹底히 團束한다.
- 病院, 助産員, 禮式場等에 人口動態 事項의 申告義務를 賦与한다.
- 人口動態係를 課로 擴張한다.
- 地方人力을 補強(邑·面等에 統計專擔要員 配置) 한다.
- 每月 20日을 “申告의 날”로 制定하여 弘報를 強化한다.
- 每年 10月을 人口動態 및 戶籍申告 強調期間으로 設定한다.
- 매스콤을 利用한 對國民 啓蒙(宣傳)을 強化한다.
- 保社部의 家族計劃要員을 活用한다.

다) 同 方案施行에 앞선 과도적 措置

- 未申告者 一掃期間 設定이 必要하다.
- 標本調査가 實施되어야 한다.
- 示範地域의 設定運營이 必要하다.

라) 其他事項

- 戶籍制度를 改善(本籍地主義, 지나친 法定主義 等) 한다.

- 住民登錄의 徹底化를 期한다.
- 適切한 時期에 保社部로 移管(面單位 保健支所 設置 및 無医面 解消等 受容態勢가 이루어질때) 한다.

라. 統計局 및 延世大 人口 및 家族計劃 研究所의 建議

1) 1978年 統計局 및 延世大 人口 및 家族計劃研究所의 人口動態統計 改善事業 最終報告書 作成

2) 主要内容

가) 法令 및 組織에 관한 事項

- 戶籍人口動態 및 住民登錄證 申告制度는 하나의 法令에 의해 統合되어야 한다.
- 統合의 基本方向은 現 居住地 申告를 中心으로 하는 새로운 “國民申告法”을 制定한다.
- 申告事務에 대한 監督, 人事 및 豫算權은 一元化되어야 한다. (法院 - 內務部)
- 人口動態 統計作成은 戶籍申告의 가장 重要한 目的의 하나로 認識하고 이에 관한 事項은 調查統計局의 事前 協議를 하도록 法令에 明示되어야 한다.

나) 申告節次 및 行政에 관한 事項

- 各 一線機關의 業務內容을 申告書의 接受등에만 局限하지 말고 擔当地域의 完全申告를 達成하는 것을 目標로 하도록 한다.
- 死亡原因統計도 時急히 改善되어야 한다.
- 接受證의 發給을 義務化해야 한다.

- 提出申告書の 枚数を 1 枚로 限定하고 必要한 境遇 複
写하여 使用하며 数字의 漢字記入을 없애고 訂正方法
은 訂正後 捺印만으로 可能토록 한다.
- 保健所, 病院, 助産員等 出生, 死亡과 關聯있는 医療機
関은 申告義務를 賦与한다. 特히 死亡原因統計의 作
成을 위하여 保健所가 住民의 死亡診斷書 作成에 參
与토록 한다. 또한 醫師, 看護員 等の 教育課程에 死
亡原因 및 出生, 死亡申告에 關한 教育內容을 包含한
다.
- 遲延申告와 不申告를 区分하여 適正한 罰課金을 賦課
하고 現 過怠料 上限線 5,000 圓을 大幅 引上 措置
한다. 遲延申告에 對한 過怠料 賦課를 嚴格히 施行
한다. 過怠料 賦課는 非訟事件 節次에 의하지 말고
通告処分의 形式으로 한다.
- 班常會 및 統·里·班長을 通해 未申告件 把握 및 申
告督勵를 強化한다.
- 事故에 의한 死亡(警察), 기아 및 身元不明의 行려
병사자(警察), 埋·火葬申告(洞·邑·面), 出生·死亡
과 關聯된 保險金 支給(保險会社)等에서도 申告를 確
認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한다.
- 申告項目을 더욱 縮小하여야 한다.

	削除勸告項目	項目名稱變更
出生	父母의 職業, 教育程度	父母의 同居年月→父母의 實際 婚姻年月 母의 出産回数→出産順位 (몇 번째) (* 死産을 分離) 妊娠月數 및 胎數→妊娠月數 (* 胎數는 別途 項目으로)
死亡	教育程度	死亡前 職業→具體的으로 記入할 수 있도록 改編
婚姻	成婚過程, 婚姻場所, 職業, 教育程度	實際上 同居年月→實際 婚姻年月
離婚		實際上 同居年月→實際 婚姻年月 ※ 追加: 年齡別 子女數 (12 歲 및 20 歲 基準)

- 一時的 弘報와 같은 短期間의 勞力만으로는 成功할 수 없으며 政府次元의 分明하고 強한 意志와 持續的인 勞力의 投入이 必要하다.

- 学校教育課程에 挿入

마. 行政改革 調査委員會의 勸告

1) 1969年11月 “戶籍制度의 改善을 위한 調査報告書” 作成

2) 主要内容

가) 機構面

- 問題點: 戶籍事務의 司法部 管掌으로 인한 不合理性

- 建議：戶籍事務를 行政府(法務部)에 移管

나) 制度面

- 問題点：① 戶籍事務의 沈滯
② 戶籍·住民登錄：人口動態事務의 유기성, 統一性 缺如
- 建議：① 戶籍申告 義務者에 대한 申告促進(間接責任制)를 強化하는 方案으로 里·統·班長, 醫師, 助産員에 申告 義務化
② 戶籍事務의 監督, 人事, 豫算權을 一元化
③ 每年 戶籍 및 人口動態 整理期間 設定

다) 運營面

- 問題点：① 擔當職員의 專門性, 獨立性 缺如
② 教育訓練 未備
- 建議：① 戶籍擔當職員의 專門化
② 一般行政事務와 分離, 独立的 業務체제로 改編
- 問題点：① 戶籍事務 裝備의 貧弱
② 戶籍簿冊의 마멸심대
- 建議：① 年次的으로 裝備 現代化
② 호적부칙을 카드式으로 改編

3. 日本의 人口動態統計 作成 概要

가. 根拠法令

- 戶籍法 및 同法 施行規則 (法律 第224号)
- 人口動態調査令 및 同令 施行規則 (勅令第447号 및 厚生省令 第6号)
- 出生證明書의 樣式等을 定한 省令 (法務, 厚生省令 第1号)
- 死産의 届出에 關한 規定 (厚生省令 第42号)
- 死産居書, 死産證書와 死胎檢案書에 關한 省令 (厚生省令 第12号)

나. 調査対象 및 申告方法

調査対象	届出義務者	届出先	届出期間
出生	父, 母, 同居者, 出生에 關与한 醫師, 助産員 및 其他 立会者	} 市区町村長	14日
死亡	同居하고 있는 親族, 同居人, 家屋 또는 土地의 管理人		7日
死産	父, 母, 同居人, 死亡에 關与한 醫師, 助産員 및 其他의 立会者		7日
婚姻	夫, 妻	} 夫 또는 妻의 本籍地 所在地의 市区 町村長	
離婚	夫, 妻		

다. 申告項目

調査対象	申告項目
出生	<p>* 1) 姓名, 性別, 嫡出者与否 * 2) 出生年月日時</p> <p>3) 出生地住所 4) 出生地国名</p> <p>5) 父母의 姓名 및 年齡 6) 出生者의 国籍</p> <p>7) 同居開始年月日</p> <p>8) 出生當時 家口主의 仕事</p> <p>9) 出生當時 父母의 職業</p> <p>*10) 出生者의 体重</p> <p>*11) 雙者 以上인지의 与否 및 出生順位</p> <p>*12) 出生場所(施設의 名称)</p> <p>*13) 妊娠週数</p> <p>*14) 母의 總出生兒数 및 妊娠 滿 20 週 以後의 死産兒数</p> <p>*15) 出生當時 立会者(姓名包含)</p>
死亡	<p>* 1) 姓名 2) 性別</p> <p>3) 出生年月日時 * 4) 死亡年月日時分</p> <p>5) 死亡地国名 6) 死亡者의 住所</p> <p>7) 国籍 8) 配偶關係</p> <p>9) 配偶者의 滿年齡</p> <p>10) 死亡申告月日 및 申告接受處</p> <p>11) 死亡者의 家口主의 仕事</p> <p>12) 死亡者의 職業 및 産業</p>

調査対象	申告項目
	側面, 母의 側面, 優生保護法에 의한 死産일 경우 疾患名 또는 理由) *16) 胎兒 解剖의 有無 *17) 死産에 立會한 者
婚 姻	1) 夫, 妻의 姓名 및 生年月 2) 夫의 住所 3) 国 籍 4) 婚姻後의 夫婦의 姓 5) 同居開始 또는 同居豫定年月 6) 初婚·再婚의 区分 (夫·妻別 直前의 婚姻解消의 年月) 7) 同居開始前의 家口主의 仕事 8) 同居開始前의 夫妻의 職業
離 婚	1) 夫·妻의 姓名 및 生年月日 2) 国 籍 3) 離婚의 種別 4) 調停·審判 또는 判決의 年月 5) 未成年의 子의 數 6) 同居의 期間 (同居開始年月 및 別居開始年月) 7) 別居前의 住所 8) 別居前의 家口主 仕事 9) 別居前의 夫妻의 職業

註：* 表示項目은 添附書類에 記載된 事項임

다. 申告書 枚數 및 添附書類



調査対象	申告書 枚數	添 附 書 類
出 生	1 枚 (本籍地以外에 申告 時 2 枚)	出生證明書 (醫師 및 助産婦의 記名捺印要)
死 亡	1 枚 (")	死亡診斷書 또는 死體檢案書 (醫師 및 助産婦의 記名捺印要)
死 産	1 枚	死産證書 또는 死胎檢案書 (")
婚 姻	2 枚 (夫 또는 妻의 本 籍地 以外에 申告 時 3 枚)	本籍地 以外 申告時 戶籍抄本
離 婚	2 枚 (本籍地 以外에 申 告時 3 枚)	本籍地 以外 申告時 戶籍謄本 但, 調停離婚의 境遇 調停調書의 謄本 審判離婚의 境遇 審判書의 謄本 判決離婚의 境遇 判決書의 謄本

마. 過怠料

- 失期申告時 500 円 以下 (但, 催告後 不申告時
1,000 円 以下)
- 過怠料 裁判→管轄 簡易裁判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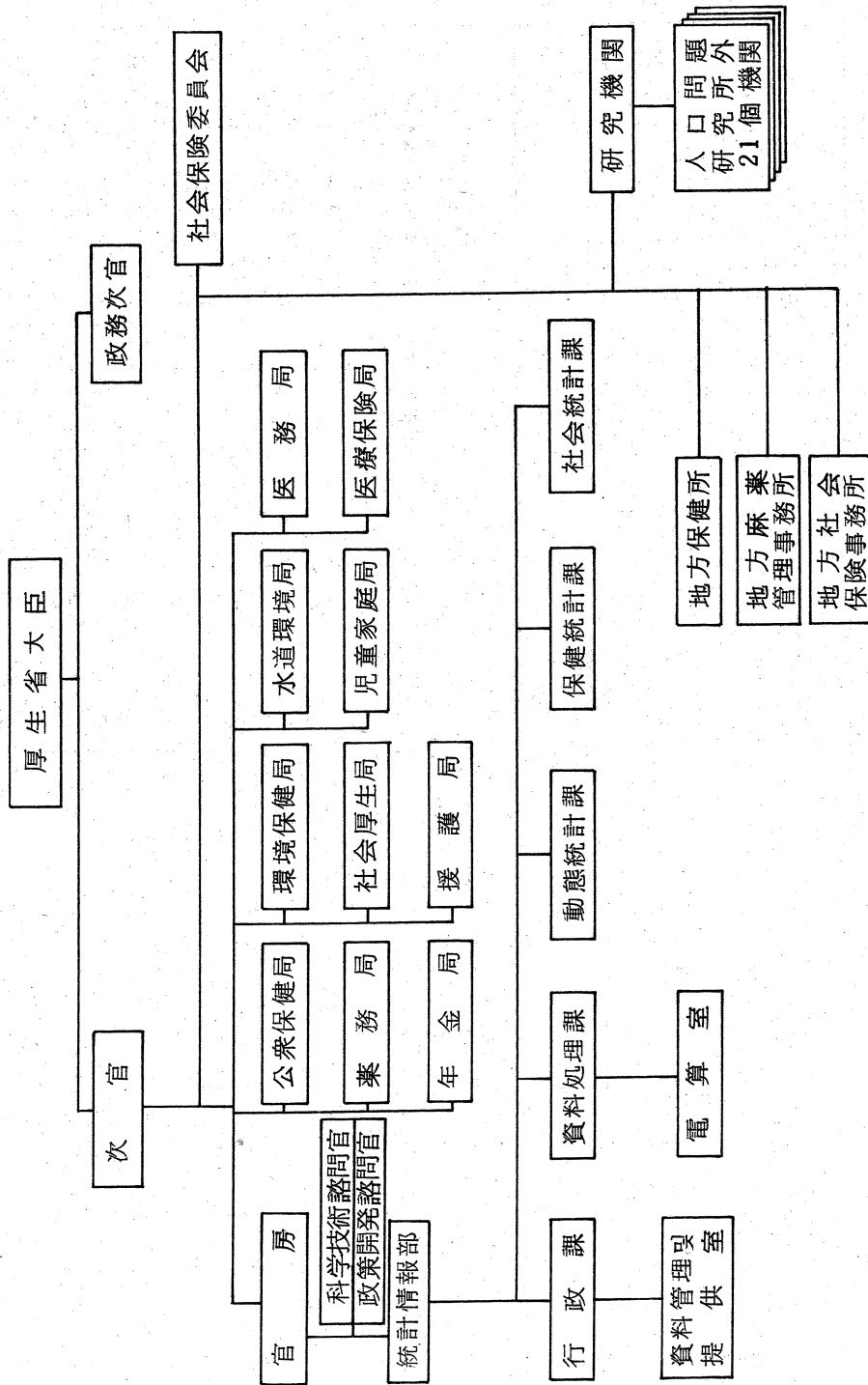
바. 報告經路 및 機關別 擔當業務 內容

報 告 經 路	擔 當 業 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width: fit-content;"> 申告接受機關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width: fit-content;"> 市区町村長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調査票作成 및 事件簿 作成 後 遲滯없 이 送付 </p>	<p>1) 各種申告書의 接受 및 受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戶籍法에 의한 各種 申告書를 接受 받아 內容檢討後 受理 ○ 失期申告에 대한 事由書를 받아 管轄 簡易裁判所에 通知 <p>2) 調査票의 作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申告書와 添附된 證明書를 基礎로 作成 ○ 原則적으로 最初로 事件을 把握한 市·区·町·村에서 作成 ○ OMR 카드에 符号記入 (保健所가 記入할 項目除外) <p>3) 事件簿의 作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調査의 完全性을 確保하기 爲하여 事件簿와 申告書 (各種 證明書類에도 記入) 및 調査票에 同一番号를 記入 ○ 事件簿에는 接受月日, 事件簿番号, 居出事件本人의 本籍 및 姓名, 調査票 送付年月日을 記入

報 告 經 路	擔 當 業 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事件簿는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別로 各各 作成하며 事件簿番号는 每年度初에 更新하여 賦与하되 各年度의 事件簿 番号는 申告書 受理 順序에 따라 一連番号를 記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p>一次檢討機關</p> <p>保 健 所 長</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翌月 20 日 까지 送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調査票의 接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町村 送付票와 調査票의 对照 ○ 保健所 符号 및 接受月日 2) 調査票의 審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内容檢査 要領書에 의거 各種 調査票 内容審査 ○ 錯誤發見時 市町村長 또는 醫師, 助産婦등에 直接 照會 3) OMR 카드에 符号 記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死亡票→事件簿番号, 支所番号, 死亡者 住所, 死亡者의 職業 및 産業, 死亡原因 및 死亡場所 ○ 死産票→死亡票와 同一 ○ 婚姻票→夫의 住所, 夫・妻의 職業 ○ 離婚票→別居前의 夫妻의 職業 4) 出生票 付票 및 死亡小票 作成 保管 (3 年)

報告 經 路	擔 當 業 務
<p style="text-align: center;">↓</p>	5) 調査票 整理 및 調査票 送付 (人口動態統計月報作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二次檢討機關 都道府縣知事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翌月末日 까지 送 付</p>	1) 調査票의 接受 2) 調査票의 審査 (審査要領書에 의거 再 審査) 3) 總括表 作成 (人口動態統計月報) 4) 市町村 및 保健所의 管轄区域 變更・ 新設內容 報告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統計作成機關 厚生大臣 </div>	1) 人口動態資料處理 및 統計作成 2) 人口推計 3) 現地 指導業務遂行 (法務省과 共同)

4. 厚生省 組織 図表



4. 關係法令

가. 戶籍法(拔萃)

제 1 장 總 則

제 1 조 (目的) 이 법은 戶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管掌) 戶籍에 관한 사무는 市, 邑, 面의 長이 이를 管掌한다.

제 3 조 (市, 邑, 面長과 戶籍事件) ①市, 邑, 面의 長은 자기 또는 자기와 戶籍을 같이 하는 자에 관한 戶籍事件에 대하여는 그 職務를 행할 수 없다.

②戶籍事務에 관하여 市, 邑, 面의 長을 대리하는 자도 제 1 항과 같다.

제 4 조 (監督) ①戶籍事務는 市, 邑, 面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管轄하는 家庭法院長이 이를 監督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②家庭法院支院長은 家庭法院長의 명을 받아 그 管轄区域内的의 戶籍事務를 監督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제 5 조 (區의 戶籍事務) 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와 區를 둔 市에 있어서는 이 법중 市, 市長 또는 市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區, 區廳長 또는 區의 사무소를 말한다. <改正 81.12.17 法 3463>

제 6 조 (手数料의 歸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이를 서울特別市, 直轄市, 市, 邑, 面의 수입으로 한다.

<改正 81.12.17 法 3463 >

② 제 1 항의 수수료의 額은 大統領令으로 이를 정한다.

제 7 조 (事務費用) 市, 邑, 面의 長이 관장하는 戶籍事務에 요하는 費用은 당해 市, 邑, 面의 부담으로 한다.

제 2 장 戶 籍 簿

제 8 조 (戶籍의 編製) 戶籍은 市, 邑, 面의 구역내에 本籍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戶主를 基準으로 하여 家別로 이를 編製한다.

제 9 조 (戶籍의 編綴) 戶籍은 地番의 순서에 따라 이를 編綴하여 장부로 한다.

제 10 조 (原本과 副本, 그 保存) ① 戶籍은 原本과 副本을 작성한다.

② 原本은 市, 邑, 面의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고 副本은 監督法院이 이를 保存한다. 새로 戶籍을 編製한 때에는, 市, 邑, 面의 長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監督法院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戶籍簿의 搬出禁止) ① 戶籍簿는 사변을 避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 以外에 市, 邑, 面의 사무소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② 戶籍簿를 市, 邑, 面의 사무소밖으로 옮긴 때에는 市, 邑, 面長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監督法院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戶籍簿의 閱覽, 謄本, 抄本) ① 戶籍簿의 閱覽 또는 戶籍의 謄本, 抄本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戶籍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 또는 戶籍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도 제 1 항과 같다.

③ 수수료외에 郵送料를 납부하고 謄本, 抄本 또는 제 2 항에 규정된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謄本은 청구에 따라 除籍者에 관한 기재의 謄寫를 省略하고 이

를 작성할 수 있다.

제 13 조 (戶籍簿의 再製, 補完) ① 戶籍簿의 전부 또는 일부가 滅失하였을 때 또는 滅失의 憂慮가 있을 때에는 大法院長은 그 再製, 補完 또는 保全에 관하여 必要한 처분을 명한다.

② 제 1 항의 滅失의 경우에는 市, 邑, 面의 長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除籍簿) ① 戶主相統, 無後 기타 사유로 同一戶籍内の 全員을 그 戶籍에서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戶籍은 이를 戶籍簿에서 除去하며 따로 편철하고 除籍者로서 이를 保存한다.

② 제 11 조 내지 제 13 조의 규정은 除籍簿와 제거된 戶籍에 이를 준용한다.

제 3 장 戶籍의 記載

제 15 조 (戶籍의 記載事項) 戶籍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本 籍
2. 前戶主의 성명
3. 戶主 및 家族의 성명과 本
4. 戶主 및 家族의 출생연월일
5. 戶主 및 家族이 된 원인과 연월일
6. 戶主 및 家族의 親生父母의 성명과 戶主 및 家族과 親生父母와의 關係
7. 戶主 또는 家族이 養子인 때에는 그 養親 및 親生父母의 성

명과 養子와 養親 및 親生父母와의 關係

8. 戶主와 前戶主 및 家族과의 關係

9. 가족의 配偶者 또는 家族을 거쳐서 戶主와 親族關係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그 家族과의 關係

10. 他家에서 入籍한 家族이 다른 家族과 親族關係가 있을 때에
는 그 關係

11. 他家에서 入籍한 戶主 또는 家族에 대하여서는 그 原籍, 原
籍의 戶主의 성명 및 그 戶主 또는 家族이 된자와의 關係

12. 後見人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後見人의 성명, 本籍 및 그
就任 또는 任務終了의 年월일

13. 其他 戶主나 家族의 身分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
하는 사항

제 16 조 (戶籍內的 記載順位) ① 戶籍內的 各人의 기재는 다음 순
위에 의한다.

1. 戶 主

2. 戶主의 直系尊屬

3. 戶主의 配偶者

4. 戶主의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

5. 戶主의 傍系親族과 그 配偶者

6. 戶主의 親族이 아닌자

② 直系尊屬간에 있어서는 世數가 먼 자를 先順位로 하고 直系卑
屬 또는 傍系親族간에 있어서는 世數 또는 寸數가 가까운 자를
先順位로 한다.

③戶籍을 편제한 후 家族이 된자는 戶籍의 末尾에 이를 기재한다.

제 17 조 (戶籍의 記載節次) 戶籍은 신고, 보고, 신청, 증서의 謄本, 航海日誌의 謄本 또는 裁判書에 의하여 이를 기재한다.

제 18 조 (新戶籍의 編製) ①戶主相統, 戶主相統回復 기타 戶主의 變更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과 前戶主 또는 戶主의 名義를 가졌던 자의 戶籍에 의하여 新戶籍을 편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경우에는 前戶主 또는 戶主의 名義를 가졌던 자의 戶籍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 19 조 (胎兒가 戶主相統人인 境遇) 戶主相統人이 胎兒인 때에는 그 출생의 기재를 하기까지는 前戶主의 戶籍중 戶主에 관한 부분을 말소하고 戶主相統人이 胎兒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 2 (法定分家) ①民法第 789 条第 1 項의 境遇에는 婚姻申告가 있으면 夫를 戶主로 하여 新戶籍을 編製하여야 한다.

②入養, 入養의 無效와 取消, 罷養 또는 離婚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生家 또는 其他의 家에 入籍하게 된 者로서 配偶者나 直系卑屬이 있는 者에 關하여는 第 1 項의 境遇에 準하여 新戶籍을 編製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申告人은 申告書에 新本籍을 記載하여야 한다.

제 20 조 (無籍者) 父 또는 母의 戶籍에 입적할 자를 除外하고 戶籍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새로 戶籍의 기재를 하여야 할 때에는 新戶籍을 편제한다.

제 21 조 (除籍) 新戶籍에 편제된 자 및 他家에 入籍하는 자는 종전의 戶籍에서 除籍된다. 死亡者, 失蹤宣告를 받은 자, 国籍을 喪失한 者도 또한 같다.

제 22 조 (戶籍의 訂正) ①戶籍의 기재가 법률상 無效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錯誤나 遺漏있음을 안 때에는 市, 邑, 面의 長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錯誤 또는 遺漏가 市, 邑, 面의 長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通知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通知를 하였으나 戶籍 訂正의 申請을 하는 者가 없는 때, 戶籍記載의 錯誤 또는 遺漏가 市·邑·面의 長의 過誤로 인한 것인 때에는 市·邑·面의 長은 監督法院의 許可를 얻어 職權으로 戶籍의 訂正을 할 수 있다. 다만,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輕微한 事項일 경우에는 市·邑·面의 長이 職權으로 訂正하고, 이를 監督法院에 보고 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③法院 기타 官公署 또는 檢事 其他 公務員이 그 직무상 戶籍의 기재에 錯誤 또는 遺漏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本籍地의 市, 邑, 面의 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通知를 받았을 때에는 市, 邑, 面의 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處理한다.

제 23 조 (行政区域, 名称等の 變更과 戶籍) ①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名称이 변경된 때에는 戶籍의 기재는 訂正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재를 更正하여도 無妨하다.

②地番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戶籍의 기재를 更正하여야 한다.

제 24 조 (戶籍과 書類의 引繼) 市, 邑, 面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戶籍 및 이에 관한 서류는 이를 당해 市, 邑, 面에 引繼하여야 한다.

제 4 장 申 告

제 1 절 通 則

제 25 조 (申告의 場所) ① 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本籍地 또는 신고인의 住所地나 現住地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国籍이 없는 자에 관한 신고는 그 居住地 또는 신고인의 住所地나 現住地에서 하여야 한다.

제 25 조의 2 (出生·死亡의 申告에 있어서의 洞의 經由) ①市에 있어서 出生·死亡의 申告는 第 25 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할 場所가 申告事件 本人의 住民登錄地 또는 住民登錄을 할 地域과 같은 경우에는 申告事件本人의 住民登錄地 또는 住民登錄을 할 地域을 管轄하는 洞을 經由하여 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申告를 받은 洞의 長는 遲滯없이 이를 管轄市長 또는 區廳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③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 1 項의 申告를 市長 또는 區廳長이 受理한 때에는 그 申告는 洞의 長에게 申告한 때에 受理된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75.12.31 法 2817]

제 26 조 (申告後本籍이 判明된 때) 本籍이 分明하지 아니한 자

또는 本籍이 없는 자에 관한 신고가 受理된 후 그 자의 本籍이 分明하여진 때 또는 그 자가 本籍을 가지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신고를 受理한 市, 邑, 面의 長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제 27 조 (申告方法) 신고는 書面 또는 口述로 이를 할 수 있다.

제 28 조 (申告樣式) 申告樣式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戶籍申告가 他法습이 規定한 申告에 같음되는 경우에 당해 申告樣式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關係部処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제 29 조 (申告書記載事項) ①신고서에는 다음 事項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의 년월일

3. 신고인의 출생년월일 그 本籍, 住所 및 戶住의 성명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本籍, 住所, 성명, 출생년월일 및 신고인의 資格

②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을 따라 去家하여 他家에 入籍하거나 기타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本籍 및 신분 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30 조 (申告人이 無能力者인 境遇와 申告書記載事項) ①신고를

하여야 할 자는 未成年者 또는 禁治産者인 때에는 親權을 行使하는자 또는 後見人을 申告義務者로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無妨하다.

②親權을 行使하는 者 또는 後見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및 本籍
2. 無能力의 원인
3. 신고인이 親權을 행사하는 자 또는 後見人이라는 것

제 31 조 (同意가 不必要한 無能力者の 申告) ①無能力者가 그 法定代理人의 同意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無能力者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禁治産者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性質 및 效果를 理解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診斷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제 32 조 (証人을 必要로 하는 申告) 증인을 必要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출생년월일, 本籍 및 住所를 기재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33 조 (不存在 또는 不知의 事項)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存在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趣旨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市, 邑, 面의 長은 法律上 記載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이를 受理하지 못한다.

제 34 조 (法令所定以外의 記載事項) 신고서에는 본법 기타 법령

의 정하는 事項外에 戶籍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明瞭하게 함
에 특히 必要한 것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35 조 (提出할 申告書의 數) ① 2 개소 이상의 市, 邑, 面의 사
무소에서 戶籍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市, 邑, 面의 사무
소의 數와 同數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本籍地外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는
外에 신고서 1 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 邑,
面의 長은 신고서의 謄本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6 조 (口述에 依한 申告, 代理人에 依한 申告) ① 口述로써 신
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市, 邑, 面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
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陳述하여야 한다.

② 市, 邑, 面의 長은 신고인의 진술을 필기하고 신고의 년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書面に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第 1 項 및 第 2 項의 경우에 신고인이 疾病 其他 사고로 출석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60 조, 제 61 조, 제 66 조, 제 67 조, 제 69 조, 제 72 조, 제
76 조 및 제 79 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7 조 (同意, 承諾, 許可를 要하는 事件의 申告) ① 신고사건에
있어서 父母 기타의 同意 또는 承諾이 必要한 경우에는 신고서
에 그 同意 또는 承諾을 증명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그러나 親族會가 同意를 하는 경우에는 親族會의 決議錄을 添附하여야 하며 그 外의 同意 또는 承諾에 있어서는 同意 또는 承諾을 한 자로 하여금 申告書에 그 事由를 附記하고 記名捺印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사건 申告人 또는 申告事項 등에 있어서 裁判 또는 官廳의 許可를 요하는 事項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裁判 또는 許可書의 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제 38 조 (申告書에 關한 準用規定)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 36 조제 2 항 및 제 37 조제 1 항의 書面에 이를 準用한다.

제 39 조 (外國에 있어서의 申告) 外國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을 管轄하는 大韓民國在外公館 (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 의 長에게 申告 또는 申請을 할 수 있다.

제 40 조 (外國에 있어서의 申告) ①外國에 있는 大韓民國國民이 그 나라의 方式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月以內에 그 地域을 管轄하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그 증서의 謄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在外公館의 管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月이내에 本籍地의 市, 邑, 面의 長에게 證書의 謄本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 41 조 (外國에 있어서의 申告) 在外公館의 長은 제 39 조 및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受理한 때에는 1月이내에 外務部長官을 經由하여 이를 본인의 本籍地의 市, 邑, 面의 長, 法院 기타 당해 官公署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 42 조 (申告期間의 起算點) ①신고기간은 신고사건발생일로부터 이를 起算한다.

②裁判의 確定日로부터 기간을 起算하여야 할 경우에 裁判이 送達 또는 交付前에 確定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제 43 조 (申告의 催告) ①市, 邑, 面의 長은 신고를 懈怠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申告義務者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②申告義務者가 제 1 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市, 邑, 面의 長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催告를 할 수 있다.

③제 22 조제 2 항의 규정은 제 2 항의 催告를 할 수 없는 때 및 催告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제 3 항의 규정은 法院 기타 官公署 또는 檢事 기타 공무원이 신고를 懈怠한 자 있음을 안 때에 이를 準用한다.

제 44 조 (申告書의 追完) 市, 邑, 面의 長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欠缺이 있으므로 인하여 戶籍의 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申告義務者로 하여금 이를 追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 43 조의 규정을 準用한다.

제 45 조 (期間經過後의 申告)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市, 邑, 面의 長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 46 조 (死亡後에 到達한 申告) ①신고인의 生存중에 郵送한 신고서는 그 死亡後라도 市, 邑, 面의 長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의 死亡時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 47 조 (受理, 不受理證明書와 書類의 閱覽) ①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 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利害關係人은 신고서 기타 市, 邑, 面의 長이 수리한 서류의 閱覽을 청구하고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8 조 (申告書不受理의 通知) 市, 邑, 面의 長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제 2 절 出 生

제 49 조 (出生申告의 記載事項) ①出生의 신고는 1月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子의 姓名, 本 및 性別
2. 子의 親生子 또는 婚姻外의 出生者의 구별
3. 出生의 年월일시 및 장소
4. 父母의 姓名 및 本
5. 子가 入籍할 家의 戶主의 姓名 및 本籍
6. 子가 一家를 創立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제 50 조 (出生申告의 場所) ① 出生의 신고는 出生地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② 기차 기타 교통기관 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母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航海日誌의 비치가 없는 선박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入港한 곳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 51 조 (申告義務者) ① 親生子의 出生의 신고는 父가 이를 하고 父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母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 婚姻外出生子の 신고는 母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계기한 자가 그 順位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戶主

2. 同居者

3. 分娩에 關여한 醫師, 助産員 또는 기타의 자

제 52 조 (親生否認의 訴를 提起한 때) 親生子否認의 訴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53 조 (法院이 父를 定하는 때) ① 民法 제 845 조의 규정에 의하여 法院이 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出生의 신고는 母가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父가 未定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 51 조제 3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 54 조 (航海中の 出生) ① 航海中에 出生이 있는 때에는 船長은 24 시간 이내에 제 49 조제 2 항에 계기한 사항을 航海日誌에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港口에 到着하였을 때에는 船長은 지체없이 出生에 관한 航海日誌의 謄本을 그 地의 市, 邑, 面의 長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선박이 外國의 港口에 到着하였을 때에는 船長은 지체없이 제 2 항의 謄本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발송하고 在外公館의 長은 지체없이 外務部長官을 경유하여 이를 本籍地의 市, 邑, 面의 長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 55 조 (公共施設에서의 出生) 병원, 矯導所, 기타의 시설에서 出生이 있었을 경우에 父母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當該 시설의 長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56 조 (出生申告前에 死亡한 때) 出生의 신고전에 子가 死亡한 때에는 出生의 申告와 동시에 死亡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 57 조 (棄兒) ①棄兒를 발견한 자 또는 棄兒發見의 통지를 받은 警察官은 24 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市, 邑, 面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보고가 있었을 때에는 市, 邑, 面의 長은 所屬品, 發見場所, 發見年月日時 기타의 상황, 性別, 出生의 推定年月日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조서는 이를 신고서로 본다.

③市, 邑, 面의 長은 民法제 781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棄兒의 姓과 本을 創設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이를 戶籍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58 조 (父母가 棄兒를 찾을 때) ①父 또는 母가 棄兒를 찾

은 때에는 1月이내에 제 4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戶籍의 訂正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는 市, 邑, 面의 長이 이를 確認하여야 한다.

제 59 조 (棄兒가 死亡한 때) 제 57 조제 1 항 또는 제 58 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棄兒가 死亡하였을 때에는 死亡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 절 認 知

제 60 조 (認知申告의 記載事項) 認知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子의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및 本籍
2. 死亡한 子를 認知할 때에는 死亡의 년월일 그 直系卑屬의 성명, 出生의 년월일 및 本籍
3. 父가 認知할 때에는 母의 성명과 本籍
4. 子가 家族인 때에는 戶主의 성명, 本籍 및 戶主와 子와의 관계

제 61 조 (胎兒의 認知) 胎内に 있는 子를 認知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母의 성명 및 本籍을 기재하고 認知者의 本籍地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62 조 (親生子出生의 申告에 의한 準正) 父가 婚姻外의 子에 대하여 親生子出生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效力이 있다. 그러나 제 52 조의 경우는 例外로 한다.

제 63 조 (裁判에 依한 認知) ① 認知의 裁判이 確定된 경우에는 訴를 제기한 자는 裁判의 確定日로부터 1月以內에 裁判의 謄

本 및 確定證明書を 添附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②제 1 항의 신고서에는 裁判確定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64 조 (遺言에 依한 認知) 遺言에 의한 認知의 경우에는 遺言 執行者는 그 就任日로부터 1月이내에 認知에 관한 遺言書謄本 또는 遺言錄音을 기재한 書面을 添附하여 제 60 조 또는 제 61 조의 規定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제 65 조 (認知된 胎兒의 死産) 認知된 胎兒가 死體로 分娩된 경우에 出生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月이내에 認知의 신고지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遺言執行者가 제 64 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遺言執行者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제 4 절 入 養 (省 略)

제 5 절 罷 養 (省 略)

제 6 절 婚 姻

제 76 조 (婚姻申告의 記載事項) ①婚姻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本, 出生의 년월일 및 本籍
2. 父母의 성명 및 本籍 그러나 당사자가 養子인 때에는 養親의 성명 및 本籍
3. 당사자가 家族인 때에는 그 戶主의 성명, 本籍 및 戶主와의

관계

4. 妻家에 入籍할 婚姻 또는 婿養子일 때에는 그 사실
 5. 당사자가 初婚 아닌 때에는 直前の 婚姻이 解消된 年월일
 6. 당사자가 同姓同本일지라도 血族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 ②第 19 条의 2 第 1 項의 婚姻申告의 境遇에는 第 1 項의 記載事項 外에 新本籍을 申告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의 一方이 婚家로부터 다시 婚姻으로 인하여 他家에 入籍하는 경우에는 親家の 戶主의 姓名, 戶主와의 關係 및 本籍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76 조의 2 (裁判에 의한 婚姻) 事實上婚姻關係存在確認의 裁判이 確定된 경우에는 審判을 請求한 者는 裁判의 確定日로부터 1 月이내에 裁判書의 謄本 및 確定證明書를 添附하여 第 76 条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本条新設 63. 7.31 法 1377]

제 77 조 (婚姻申告의 場所) 婚姻의 신고는 夫의 本籍地 또는 住所地나 現住地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妻家에 入籍할 婚姻 또는 婿養子일 경우에는 妻의 本籍地 또는 住所地나 現住地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78 조 (準用規定) 제 63 조의 규정은 婚姻無效 또는 婚姻取消의 裁判이 確定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 7 절 離 婚

제 79 조 (離婚申告의 記載事項) 離婚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本 및 本籍
2. 당사자의 父母의 성명 및 本籍 그러나 당사자가 養子인 때에는 養親의 성명 및 本籍
3. 당사자가 家族인 때에는 戶主의 성명, 戶主와의 관계 및 本籍
4. 婚家를 떠나는 者가 復籍할 家의 戶主의 성명 및 本籍
5. 婚家를 떠나는 자가 一家를 創立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創立의 원인 및 장소. 그러나 親家를 復興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復興의 장소
6. 民法 제 835 조제 1 항 후단에 의하여 父母의 一方이 同意할 때에는 그 사유

제 79 조의 2 (協議上 離婚의 確認) ①協議上 離婚을 하고자 하는 者는 本籍地 또는 住所地를 管轄하는 家庭法院의 確認을 받아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國內에 居住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確認은 서울家庭法院의 管轄로 한다. <改正 81.12.17 法 3463 >

②第 1 項의 申告는 家庭法院의 確認을 받은 날로부터 3 月이내에 確認書의 謄本을 添附하여 行하여야 한다.

③第 2 項의 期間이 경과한 때에는 그 家庭法院의 確認은 效力을 喪失한다.

④家庭法院의 確認의 節次와 申告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78.12.6 法 3157 >

제 80 조 (準用規定) 婚姻無效, 婚姻取消의 신고에 關하여는 第79 條의 규정을 準用한다.

제 81 조 (準用規定) 제 63 조의 규정은 離婚 또는 離婚取消의 裁判이 確定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 8 절 親權 및 後見(省略)

제 9 절 死亡과 失蹤

제 87 조 (死亡申告와 그 記載事項) ①死亡의 신고는 제 88 조에 규정된 자가 死亡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月이내에 診斷書 또는 檢案書를 添附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死亡者의 성명, 성별 및 本籍
2. 死亡의 년월일시 및 장소
3. 死亡者가 家族인 때에는 戶主의 성명 및 戶主와 死亡者와의 관계

③不得已한 사정으로 인하여 診斷書나 檢案書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死亡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書面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診斷書 또는 檢案書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88 조 (死亡申告義務者) 다음에 계기한 자는 그 順位에 따라 死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順位에 불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다.

1. 戶主
2. 同居하는 親族
3. 기타의 同居人

4. 건물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제 89 조 (死亡申告의 場所) 死亡의 신고는 死亡地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死亡地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死體가 처음 발견된 곳, 汽車 기타 交通기관내에서 死亡이 있었을 때에는 그 死體를 交通기관에서 내린 곳, 航海日誌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내에서 死亡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入港한 곳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 90 조 (事變으로 因한 死亡) 水難, 火災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死亡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死亡地의 市, 邑, 面の 長에게 死亡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外國에서 死亡이 있는 때에는 死亡者의 本籍地의 市, 邑, 面の 長에게 死亡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91 조 (死刑, 獄死) ①死刑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矯導所長은 지체없이 矯導所소재지의 市, 邑, 面の 長에게 死亡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은 在所中 死亡한 자의 死體를 찾아갈 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에 診斷書 또는 檢案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제 92 조 (前2條의 境遇의 記載事項) 제 90 조 및 제 91 조에 규정한 보고서에는 제 87 조제 2 항에 제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93 조 (本籍不明者, 認識不明者의 死亡) ①死亡者의 本籍이 分明하지 아니하거나 死亡者를 認識할 수 없는 때에는 警察官은 檢屍調書를 작성 添附하여 지체없이 死亡地의 市, 邑, 面の 長에

게 死亡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死亡者の 本籍이 분명하여지거나 死亡者를 認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警察官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보고가 있는 후에 제 88 조에 계기한 자가 死亡者를 認識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死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94 조 (準用規定) 제 54 조, 제 55 조의 규정은 死亡의 신고에 이를 準用한다.

제 95 조 (失蹤宣告의 申告, 그 記載事項) ①失蹤宣告의 신고는 그 宣告를 청구한 자가 裁判確定日로부터 1 月 이내에 裁判의 謄本을 添附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②失蹤宣告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失蹤者의 성명, 性別 및 本籍

2. 民法 제 27 조에 정한 기간의 만료일

3. 失蹤者가 가족인 때에는 戶主의 성명 및 戶主와 失蹤者와의 關係

③제 63 조의 규정은 失蹤宣告取消의 裁判이 確定된 경우에 그 裁判을 청구한 자에게 이를 準用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제 10 절 戶主相統 (省略)

제 11 절 入籍과 復籍 (省略)

제 12 절 廢家와 無後家 (省略)

제 13 절 分家와 廢家, 無後家の 復興 (省略)

제 14 절 国籍의 得喪 (省略)

제 15 절 改 名 (省 略)

제 16 절 轉籍과 就籍 (省略)

제 3 장 戶籍의 訂正 (省 略)

제 6 장 不 服 節 次 (省略)

제 7 장 罰 則

제 130 조 (罰則) 신고의 義務있는 자가 正當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천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제 131 조 (罰則) 市, 邑, 面의 長이 제 43 조 또는 제 1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催告를 한 경우에 正當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만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제 132 조 (罰則)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市, 邑, 面의 長은 1만 5천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1. 正當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受理하지 아니한 때
2. 戶籍의 기재를 하는 것을 懈怠한 때
3. 正當한 이유없이 戶籍簿, 除籍簿 또는 신고서 기타 受理한 서류의 閱覽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戶籍 또는 除去된 戶籍의 謄本, 抄本 또는 제 47 조의 증명서를 交付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戶籍事件에 관하여 직무를 懈怠한 때

②제 1 항의 過怠料處分으로 인하여 刑事責任을 免하는 것은 아니다.

제 133 조 (過怠料의 裁判) ①過怠料의 裁判은 過怠料에 처할자의 住所 또는 居所를 관할하는 家庭法院이 이를 한다. <改正 75. 12.31 法 2817 >

②제 1 항의 裁判 및 裁判의 집행에 관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の 규정을 準用한다.

제 134 조 (罰則) ①戶籍의 기재를 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虛僞의 신고를 한 자는 5 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②대한민국의 国籍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虛僞의 신고를 한자도 제 1 항과 같다.

제 8 장 施行規則

제 135 조 (施行令) 본법 시행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제 136 조 削除 < 62.12.29 法 1238 >

제 137 조 (定義) 附則에서 旧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廢止되

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 138 조 (旧법에 의한 戶籍) 旧法の 規定에 의한 戶籍 및 假 戶籍은 이를 본법의 規定에 의한 戶籍 또는 假戶籍으로 본다.

제 139 조 削除<62.12.29 法 1238>

제 140 조 (本法施行前의 申告) 本법시행전의 신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戶籍의 기재를 하거나 新戶籍을 編製하는 경우에는 旧法에 依한다.

제 141 조 削除<62.12.29 法 1238>

제 142 조 (廢止法令) 다음 각호의 법령은 廢止한다.

1. 朝鮮民事令中 戶籍에 관한 規定
2. 朝鮮戶籍令
3. 戶籍臨時措置에 관한 軍政法令
4.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호적에 관한 法條

제 143 조 (施行日) 本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62.12.29 法 1238>

- ①本法은 1963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②本法施行當時의 假戶籍은 이를 本法의 規定에 의한 戶籍으로 하고 그 假本籍을 本籍으로 한다.
- ③本法施行當時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진者로서 아직 假戶籍에 就籍하지 아니한者는 第 116條의 規定에 依한 本籍을 가지지 아니한者로 본다.
- ④本法施行當時의 假戶籍上의 戶主가 未收復地區에 居住하고 있거나

또는 이에 準하는 事由로 因하여 轉籍의 申告를 할수 없는 때에는 그家の 戶主相統順位에 依한 先順位者가 이를 할수 있다.

附 則 <63. 7. 31 法1377>

이 法은 1963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75.12.31 法2817>

이 法은 197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2条第2項 但書, 第25条의 2, 第28号 後段 및 第96条第4項·第5項에 관하여는 197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78.12. 6 法3157>

이 法은 197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81.12.17 法3463>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호적법시행령 (1 9 7 0 . 2 . 7)
대통령령제 4581호

개정 1975. 8.14 대통령령제 7719 호
1975. 9.29 대통령령제 7831 호
1976. 7.16 대통령령제 8189 호
1981.12.31 대통령령제 10693 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취임등 보고) ①시·읍·면의 장이 취임한 때에는 별지 제 1 호서식, 호적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하여 5 일 이내에 감독법원 (이하 “ 법원 ” 이라 한다)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 때에는 다음달 10 일 이내에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조 (호적공무원 명부) 법원은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명부를 비치하고, 제 1 조제 1 항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이전,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변경의 보고) ①시·읍·면의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5 일 이내에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읍·면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제 6 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부책 · 서류의 인계) ①호적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책 및 서류를 인계하는 때에는 그 목록 2 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인수한 시 · 읍 · 면의 장은 목록과 부책 및 서류를 대조하고 목록 1 통에 영수의 뜻을 부기하여 인계한 시 · 읍 · 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법원관할의 변경) ①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호적 부분 및 이에 관한 부책 및 서류는 새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경우에는 제 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 (과태료처분의 보고) 법 제 132 조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호적부 및 제적부 (省略)

제 3 장 호적의 기재

제 20 조 (호적기재 사항) ①호적에는 법 제 15 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2.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 또는 신청인의 자격 및 성명
3. 다른 시 · 읍 · 면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및 송부한 연월일
4. 보고의 접수연월일과 보고자의 직명

5. 증서나 항해일지의 등본접수의 연월일 및 그 작성자의 직명

6. 호적기재를 명한 재판의 연월일과 법원명

②제 1항제 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호주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호적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다<신설 75.9.29 대령 7831 >

제 21 조 (호적 사항란 기재) 다음 사항은 호적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
2. 호적의 전부를 정정하거나 말소하는 사항
3. 호적제제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 22 조 (신분사항란 기재) 신분에 관한 사항은 사건본인의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권·관리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은 무능력자에, 입적·부적에 관한 사항은 입적자·부적자에, 분가에 관한 사항은 분가자에 각각 이를 기재한다.

제 23 조 (호적내의 기재순위) 호적내의 각인의 기재는 법 제 16조에 정한 외에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세수 또는 촌수가 같은 친족간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2.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간에는 가족의 친족순위에 의하고, 순위가 동일한 자간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 24 조 (혼인해소의 사유)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로 인한 혼인해소의 사유는 생존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25 조 (자의 사항란)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자의 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26 조 (기타 신분사항기재) 법 제 34 조에 의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신분에 관한 것은 이를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27 조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 전적지의 호적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한 호적등본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망·혼인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 관한 사항과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 조 (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 법 제 18 조에 의하여 새로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 전 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 자의 호적기재중 중요한 사항은 신호적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입적·부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입양·혼인·파양·이혼 기타의 사유로 입적 또는 부적하는 경우에는 그 입적·부적의 사유이외에 원적의 호적기재사항 중 중요한 것은 그 신분사항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30 조 (본적지 변경후 수리한 신고서류) ①본적지가 변경된 후에 수리한 신고서류에 의하여 원적지의 시·읍·면의 장이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고 그 사유를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신고서류는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31 조 (신고의 경합에 의한 기재) 동일한 사건에 수인의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한 때에는 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 32 조 (호적기재전의 절차)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은 제 50 조제 1 항 및 제 62 조제 1 항의 절차를 밟고 지체없이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 33 조 (호적기재의 문자) ①호적에는 자획을 명료히 하고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②숫자의 기재는 浬·弍·參·拾의 자로 쓴다.

③문자는 개변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시·읍·면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야 한다.

제 34 조 (서미인) ①시·읍·면의 장은 호적기재를 할 때마다 사유의 서미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서미에 대리자격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 35 조 (호적의 기재방법) ①호적의 기재는 별지 제 14 호 서식에 정한 상당란에 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의 기재는 사건마다 행을 달리하여야 한다.

제 36 조 (호적말소의 방법) 호적의 일부를 말소하는 때에는 제적

하는 자의 사항란에 별지 제 15 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전부를 말소하는 때에는 호적사항란에 별지 제 16 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 37 조 (호적정정의 방법) 호적을 일부 정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 17 호서식에 의하여, 전부 정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 18 호서식에 의하여 정정하게 되는 사항을 인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 38 조 (호적기재의 정정) ①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 또는 지번의 변경에 따라 호적기재를 정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 19 호서식에 의하여 본적란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는 호적부의 표지에 기재한 명칭도 정정한다.

③ 제 1 항의 정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 20 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신고와 통지

제 39 조 (신고서의 수) ① 같은 시·읍·면에서 2 이상의 호적에 기재하는 사건에는 신고사건의 본인과 같은 수의 신고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읍·면의 장은 수리한 신고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 18 조의 규정은 이 조의 등본에 준용한다.

제 40 조 (서명날인에 갈음하는 방법) ① 신고인 기타의 자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성명을 대서시키고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할 수 있다.

- ②제 1 항의 경우에는 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41 조** (본적불명등의 표시) 신고인 기타의 자가 본적이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신고서류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2 조** (심사자료의 제공) 본적지외의 시·읍·면의 장은 수리하는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3 조** (호적정정의 통지) 법 제 22 조제 1 항 본문에 의한 호적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 21 호서식에 의한다.
- 제44 조** (직권정정 허가신청) 법 제 22 조제 2 항·제 3 항, 동 제 43 조제 3 항, 동 제 44 조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 22 호서식에 의한다.
- 제45 조** (최고) 신고·신청을 해태한 자에 대한 최고는 별지 제 23 호서식에, 신고·신청의 추완최고는 별지 제 24 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들 최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 25 호서식에 의하여 다시 최고할 수 있다.
- 제46 조** (실기 통지) ①시·읍·면의 장은 신고·신청 또는 그 추완을 해태한 자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 26 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관할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통지서에는 의무자의 신고해태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이유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제 47 조** (항고에 대한 조치) ①법 제 126 조제 1 항에 의하여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처분을 변경하여 법원 및 항고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7 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 126 조제 2 항에 의하여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의견을 붙일 경우에는 별지 제 28 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신고서류등의 처리

제 48 조 (신고서류등의 발송방법) 법원 또는 다른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는 호적·제적의 부분이나 신고서류 또는 그 등본에는 그 서면의 첫장 표면난의 우측상부에 별지 제 29 호서식의 발송인을 찍어 발송의 번호, 연월일 및 발송자의 직명을 기입하고 하부에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 49 조 (실기통지필의 신고서류 송부) 실기통지를 하고 그 신고서류를 다른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통지한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50 조 (신고서류의 접수방법) ①시·읍·면의 장이 신고서류를 수리하거나 그 송부를 받은 때에는 첫장 표면난외에 별지 제 30 호서식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장번호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은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호적의 정정 또는 기재를 하는 허가서에 이를 준용한다.

③시·읍·면·동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76.7.16 대령 8189 >

제 51 조 (관련사건의 신고서류 송부) 2 이상의 시·읍·면의 장이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리한 시·읍·면의 장은 호적의 기재를 하고 지체없이 신고서류의 1 통을 다른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52 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확인표시) 법 제 58 조 제 2 항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동조 제 1 항의 호적정정신청서의 표면상부란외의 적당한 곳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53 조 (신고서류의 처리상황 표시) 제 54 조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할 신고서류에는 수리와 동시에 신고사건마다 그 서류 첫장 표면상부란외에 별지 제 31 호서식의 처리인을 찍고 상당란에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 54 조 (신고서류의 정리방법) ① 호적기재를 완료한 신고서류는 본적지신고·본적지외신고로 구분하여 편철하되, 전자는 호적편철의 순서에 따르고 후자는 법 제 4 장 제 2 절 내지 제 16 절 및 법 제 5 장에 정한 순서에 따른다.

② 제 1 항에 의하여 편철한 신고서류에는 별지 제 32 호서식의 목록을 붙이고 각 장에는 장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서류는 다음달 10 일까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55 조 (신고서류의 조사) 법원은 호적·제적의 부분 또는 신고서류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법규에 위배한 것이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주의를 시키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제 56 조 (무적·본적불명·호적기재 불요의 신고서류) 본적불명자·무적자에 대한 신고서류 또는 호적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류는 접수 순서에 따라 각 장에 장수를 기입하고 별지 제 33 호서식의 목록을 붙여 편철하여야 한다.

제 57 조 (신고서류의 보존) ①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본

적지 신고서류는 가적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 52 호서식의 표지를 붙여 접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그 호적편철의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②본적지 신고서류의 목록은 미리 정한 시·읍·면의 순서에 따라 월별로 그 장수를 붙여 편철하고 매년 별책으로 한다.

③법원이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분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앞서 받은 호적부분과 그 호적에 관한 제 1 항의 가적을 함께 편철하여 폐서부로 한다.

④폐서부는 시·읍·면별, 연도별로 별책으로 하며, 가적의 호적부분 및 신고서류는 제적부분 편철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장수를 붙여야 한다.

⑤제 5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본적지의 신고서류는 시·읍·면별, 연도별로 편철하여 이를 보존한다.

⑥폐서부는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분의 송부가 있는 해의 다음해부터, 본적지 신고서류 목록 및 본적지의 신고서류는 그 신고의 해의 다음해부터 2년간 보존한다.

제 58 조 (각종 증명) ①신고서류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 34 호서식에 의한다.

②호적·제적 또는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한 증명은 별지 제 35 호서식에 의한다.

제 59 조 (불수리 통지) ①법 제 48 조에 규정한 통지는 별지 제 36 호서식에 의한다.

②불수리한 신고서류는 제 1 항의 통지서에 첨부한다.

제60조 (준용규정) 제33조의 규정은 신고서류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 (사건표) ①시·읍·면의 장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매달 처리한 사건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표는 제1항에 준하여 다음해 1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각종 장부 : 省略 (제62조~제67조)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미수복지구 취적)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은 그 본적지가 북위 38도선이북의 지구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이남의 미수복지구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일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그 경우에는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호주 또는 가족도 등재하고 "미수복지구 거주"라고 표시한다.

③ (원적지 표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호적에는 원적지를 호적편제사유란에 팔호하여 표시한다. 그러나 분가로 인하여 새로 편제되는 호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과조치) 종전의 영에 의한 서식중 별지 제5호와 제11호 내지 제14호서식의 호적은 새 서식의 호적으로 개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부 칙 < 75.8.14 대령 7719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75.9.29 대령 7831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편제된 호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호적이 편제된 자의 호적에는 성명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성명란에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적당한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란을 만들어 기재할 수 있다.

③ (이미 인쇄된 호적용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인쇄된 호적용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성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 76.7.16 대령 8189 >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1.12.31 대령 10693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지 제 20 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 20 호서식은 당분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 1 호서식]

기 관 명

호발 제 호 19 . . .

수신 ○○ 법원장

제목 취임보고

1. 이 사람은 19 . . . 임명되어 19 . . . 취임 하였으며
2. 전임자 (직 성명) 는 19 . . . 사임 (전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끝

시 · 읍 · 면장 ○ ○ ○

직인

4101-1-1A
1970.1.14 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 22 호서식]

기 관 명

호 발 제 호

수 신 ○ ○ 법원장

제 목 호적 개정 허가신청
기재

아래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본적 시 구 동 번지
군 읍(면) 리
호주 ○ ○ ○

1. 정정할 사항
기재
2. 직권 정정하여야 하는 사유
기재

첨부.....끝

시·읍·면장 ○ ○ ○

직인

4101-1-14A
1970.1.1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 23 호서식]

기 관 명

호발 제 호

19 . . .

수신 (신고 (신청) 의무자)

본 적

주 소

제목 최 고

1. 사건본인 ○○○에 대한 ○○ 신고 (신청) 를 해태 하고 있
아오니 19 까지 신고 (신청) 하시기를 최고합니다.
2. 위 기한내에 신고 (신청)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적 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 읍 · 면장 ○ ○ ○

직인

4101-1-15A
1970.1.14 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0 g/m²

[별지 제 24 호서식]

기 관 명

호발 제 호 19

수신 (신고 (신청) 의무자)

본 적

주 소

제 목 추완 최고

1. 사건본인 ○○○에 대한 19 신고 ○○ 신고는
흡결이 있어 호적기재를 할 수 없아오니 19 까
지 이를 추완 하시기를 최고합니다.
2. 위 기한내에 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읍·면장 ○○○

직인

4101-1-16A
1970.1.14 승인

190 mm× 268 mm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 25 호서식]

기 관 명

호발 제 호 19 . . .

수신 (신고 (신청) 의무자)

본 적

주 소

제목 최고 (제 2 회 이후)

1. 사건본인 ○○○에 대한 ○○신고 (신청 또는 추완) 를 19 까지 하도록 최고한 바 있으나, 아직 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옵기 19 까지 신고 (신청 또는 추완) 하시기를 다시 최고합니다.
2. 위 기한내에 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읍·면장 ○○○

직인

4101-1-17A
1970.1.1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 26 호서식]

기 관 명

호발 제 호

19

수신 ○○ 법원장

제목 실기사건통지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본 적	시	구	동	번지
	군	읍(면)	리	
주 소	시	구	동	번지
	군	읍(면)	리	

신고의무자 ○ ○ ○

1. 신고사항
2. 해태사유
3. 첨부서류
4. 참고사항

자산 부동산 (평가액) (재산세등급 등)

생활상황
교육정도

시·읍·면장 ○ ○ ○

직인

4101-1-18A
1970.1.1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 27 호서식]

기 관 명

호발 제 호

19 . . .

수신

제목 처분변경 통지

○○ 법원 70 파 ○○○ 에 관한 항고는 그 이유있음을 인정하고
19 . . . 처분을 변경하고 으로 하였음을 통지합
하겠음을
니다.

시·읍·면장 ○○○

직인

주 : 호적법 시행령 제 47 조 규정에 의하여 법원 및 항고인에게 통
지하는 경우

4101-1-19A
1970.1.1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

[별지 제 33 호서식]

특종 신고서류 목록

접수 월 일	접수 번호	사건본 인성명	신고인 성명	장수	본적 신고, 취적기 타호적기재연월일	비 고

4101-1-22C
1970.1.1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 34 호서식]

호발 제 호

증 명 서

본 적

주 소

호 주 ○ ○ ○

사건 본인 ○ ○ ○

신고사건명

위의 19 ○○○신고 (신청) 는 19
수리하였음 (○○사유에 의하여 수리하지 아니하였음) 을 증명함.

19

시·읍·면장 ○○○

직인

4101-1-23A
1970.1.1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

[별지 제 35 호서식]

호 발 제 호

증 명 서

본 적

주 소

호 주 ○ ○ ○

사건본인 ○ ○ ○

증명을 구하는 사항

위의 사항은 호적 (제적 또는 신고서류) 에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함.

(위 틀림없음을 증명함)

19 . . .

시 · 읍 · 면장 ○ ○ ○

직인

4101-1-24A
1970.1.1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 36 호서식]

기 관 명

호발 제 호

19

수신

본 적

주 소

제목 통 지

신고사건명

사건본인 ○ ○ ○

위의 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서류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

1.

2.

시·읍·면장 ○ ○ ○

직인

4101-1-25A
1970.1.14 승인

190 mm× 268 mm 신문용지 50g / m²

[별지 제 38 호서식]

접 수 장

서기 년

호 적 접 수 장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4101-1-27C
1970.1.14 승인

190mm×268mm 흑표지

[별지 제 39 호서식]

접수번호	구 별	건 명	접 수 년 월 일	신고사건 본인성명	본 적	비 고

4101-1-28C
1970.1.1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

[별지 제 42 호서식]

호 적 부 본 송 부 부

집행번호	송부월일	호 적 편 제 소		본 적		호주성명	비 고
		사 유	월 일	동(리)	번 지		

4101-1-31C
1970.1.1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 43 호서식]

실 기 사 건 통 지 부

집행번호	접수번호	통지월일	건 명	관할법원	위 반 자		비 고
					주소또는거소	성 명	

4101-1-32C
1970.1.1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²

● 호적법시행규칙 [1976.2.20]
대법원규칙제 600호

개정 1978. 3.18 대법원규칙제 643호

1978.12.30 대법원규칙제 668호

제 1 조 (직권정정사항) 호적법 제 22 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 구, 읍, 면의 장의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호적상 행정구역 명칭의 오기가 명백한 때
2. 호주상속에 인한 호적의 신편제 또는 마멸 우려로 인한 재제 (자동복사기 사용을 위한 경우와 일본어 호적의 재제 포함) 로 이기를 함에 있어서의 오기 또는 기재유루가 원호적 (제적) 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동일 호적내에서 다음의 기재 또는 정정 유루가 명백한 때
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한 생존 배우자에 대한 혼인 해소사유
나. 처의 혼인 입적의 기재 또는 이혼제적을 하고 부의 신분 사항란에 혼인 또는 이혼 사유
다. 부 또는 모가 개명 또는 성명정정을 한 경우 그 자녀의 부 또는 모 란의 각 정정
라. 가족의 분가 수반입적 사유
마. 호주 또는 가족과의 관계
4. 전원 제적으로 무후가로 된 호적의 제적처리 (호적 사항란에 제적사유 기재) 가 누락된 것이 명백한 때
5. 호적신고서를 감독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그 신고서에 의하여

호적기재의 오기 또는 기재 유루된 것이 명백한 때

6. 호적부에 간인 누락된 것이 명백한 때

제 2 조 (직권정정서의 작성) 시, 구, 읍, 면의 장은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정 및 기재를 할 때에는 별지 제 1 호양식의 직권정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조 (직권정정보고) 시, 구, 읍, 면의 장이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정을 할 때에는 직권정정서를 호적법시행령 제 54 조의 신고서류의 예에 따라 법원에 송부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신고서 양식) ① 각종 호적신고서 양식을 별지 제 2 호 내지 제 33 호와 같이 한다.

② 제 1 항 및 제 2 조 양식의 용지규격은 16 절지로 한다.

제 5 조 (이혼의사 확인신청) ① 호적법 제 79 조 2 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구술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가사심판규칙 제 4 조를 준용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년월일

2. 신청의 취지

3. 신청년월일

4. 법원의 표시

④ 제 1 항의 신청에는 호적등본 1 통과 이혼신고서 3 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혼의사의 확인) ① 제 5 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확인은 신청 당사자 본인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 본인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 1 항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 13 조와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 (확인서 작성 및 등본의 교부) ①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 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 1 항 본문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년월일
2. 이혼 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3. 확인년월일
4. 법 원

③제 2 항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서기관, 사무관, 주사 또는 주사보는 지체없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재외국민의 확인) ①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당사자 쌍방 본인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쌍방으로부터 이혼의사

의 주부를 듣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그 서류만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 3항에 의하여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 7조 각항에 정한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확인신청의 취하) ① 이혼의사 확인 신청인은 법원의 제 6조에 의한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제 6조제 2항에 의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준용규칙) 이혼의사 확인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6.3.1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양식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용지 중 변경된 용지는 수정 사용할 수 있다.

③ (규칙의 폐지) 호적신고양식에 관한 규칙 (제 401 호)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78.3.18 대법원규칙 64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8.4.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조제된 사망신고서 용지는 1978.5.31 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78.12.30 대법원규칙 668)

이 규칙은 1979.1.1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 1 호]

직 권 정 정 (기 재) 서

서 기 년 월 일

본 적

호 주 성 명

정 정 또는
기 재 할 자

서 기 년 월 일

1. 정 정 또는 기 재 할 사항
2. 정 정 또는 기 재 할 사유
3. 첨부서류

시, 구, 읍, 면 장 ○ ○ ○

직인

[양식 제 2 호]

출 생 신 고

시 구 유 민

장 귀 하

198 년 월 일

출 생 자	본 적	호 주 성 명		호 주 와 의 관 계		읍·면·동 등 접 수							
	주 소	세 대 주 성 명		세 대 주 와 의 관 계			주 민 등 록 표 정 리	월 일 ①					
	성 명			본	혼 인 중 의 자 (남·녀) 혼 인 외 의 자 (남·녀)		주 민 등 록 부 표 작 성	월 일 ①					
	출 생 년 월 일	서 기 년 월 일 시 분					주 민 등 록 번 호 부 여						
	출 생 장 소			1. 자택 2. 병원 3. 기타			대 장 정 리	월 일 ①					
부 모 성 명	부			본			모			본	번 호		
기 타 사 항												주 민 등 록 시 구 정 주	월 일 ①
신 고 인	본 적	호 주 성 명		관 계		관 할 시 구 청 접 수							
	주 소			자 격									
	서 명 날 인	출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인 구 동 태 사 항

(지정통계제 3 호)

9	부 모 의 출 생 년 월 일	부	년 월 일		모	년 월 일		본 적 지 부	월 일 ①		
10	부 모 의 직 업	부			모					본 적 지 접 수	월 일 ①
11	부 모 의 교 육 정 도	부	1. 미 취 학 2. 국민 학교 3. 중·고 교 4. 대 학 교		모	1. 미 취 학 2. 국민 학교 3. 중·고 교 4. 대 학 교		호 정 적 부 리	월 일 ①		
12	부 모 의 동 거 일	서 기 년 월 일		일 부 터		동 거		호 주 민 등 록 전 부 록 기	월 일 ①		
13	모 의 출 산 수	총 출 산	명	생 존	명	사 망	명	사 산	회	주 정	월 일 ①
14	임 신 및 태 수	임 신 만	개 월	태 수	1. 단 태 아 2. 쌍 태 아		3. 3 태 아 이 상		주 민 등 록 지 통 보	월 일 ①	
15	조 산 자	1. 의 사		2. 조 산 원		3. 기 타		인 구 동 태 사 항	월 일 ①		

◎ 신고서 작성전에 뒷면 주의사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주의사항

1. 문자는 한글로 쓰되 성명은 한자 또는 한글을, 숫자는 壹, 貳, 拾의 문자를 써야 한다.
2. 출생자가 들어가기로 정하여진 가의 본적을 제 1란에 기재하고 부가 혼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는 때에는 모의 본적표시는 기타란에 한다.
3. 출생자가 일가불 창립하는 경우에는 제 1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제 7란에 그 취지 및 원인과 장소를 기재한다.
4. 제 5란 출생장소의 구분중 해당숫자에는 ()인을 표시한다.
5. 모(母)가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 6란중 부에 관한 부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다.
6. 호적법 제53조에 의하여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 6란중 부의 성명에만 부 미정이라 기재한다.
7. 제 3란중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자의 구별에 따라 남녀로 기재한다.
8. 제 7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무능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선순위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사람의 성명, 출생년월일, 본적 및 무능력의 원인 또는 신고할 수 없는 사유.
 - 나. 기타 호적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유.
9. 신고인의 자격은 부, 모, 호주, 동거자, 후견인, 분담관여의사, 기타 해당자격을 기재한다.
10. 부모의 출생년월과 동거년월일은 사실상의 년월일로 기입한다.
11. 조산자 부, 모의 교육정도 및 태수의 남은 해당하는 곳에 「○」으로 표시한다.
12. 모의 출산회수는 실제로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이제까지 낳은 수를 각각 기입하며 재혼인 경우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도 포함한다.
13. 신고서는 본적지신고 2부(신고해태시 3부) 비본적지신고 3부(신고해태시 4부)를 제출한다.

공무원 주의사항

1. 출생신고는 본적지, 주소지 시, 구, 읍, 면 또는 주민등록지 등에서 접수처리한다.
2. 본적지, 시, 구, 읍, 면에서 접수할 경우 업무처리요령.

본적지 시, 구, 읍, 면에서 할일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할일
출생신고서접수 → 호적부정리 → 주거표정리 → 주민등록지에 통보(24호 양식)----- 호적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통보서접수 → 주민등록표등재 → 주민등록 부표작성 → 주민등록번호부여 → 주민등록번호 본적지에 통보

3.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접수한 경우 업무처리 요령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할일	본적지 시, 구, 읍, 면에서 할일
출생신고서접수 → 주민등록표등재 → 주민등록 부표작성 → 주민등록번호부여(출생신고서번호 부 여란에도 등재) → 관할시·구청 송부(단 동에서 접수한 경우에 한함) → 본적지에 출생신고서송부-----	출생신고서접수 → 호적부정리(주민등록 번 호도 기재) → 주거표정리

4. 신고서 1부는 인구동태조사용으로 시도(통계담당관실) 경유 통계기획원(조사통제국)에 제출한다.

[양식제 7호]

혼인신고

장귀하 198년 월 일

구분		부(夫)		처	
1	당	본적		본적	
		호성명	호주와의관계	호성명	호주와의관계
3	주소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관계
4	성명 및 출생년월일	본		본	
		서기 년 월 일	서기 년 월 일		
5	부모성명 및 본적	부	본적	부	본적
		성명	성명	성명	성명
	모	본적	모	본적	
	성명	성명	성명	성명	
6	양친성명 및 본적	양부	본적	양부	본적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양모	본적	양모	본적	
	성명	성명	성명	성명	
7	혼인해소년월일				
8	신본적				
9	수반입적자	성명	본가자와의관계	성명	본가자와의관계
10	기타사항				
11	중본적 주소			서날명	
				출생년월일	

※ 이 신고용지는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1	중본적		서명날인
	주소		서명날인
12	동부(夫)의부인		출생년월일
	부(夫)의모인		출생년월일
	동부(夫)의부인		출생년월일
	처(妻)의부인		출생년월일
13	신부(夫)		출생년월일
	신부(夫)의부인	처서명날인	출생년월일

- 비고
1. 처가에 인적하는 혼인 또는 서양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명칭에 표시한다.
 2. 제 8란에는 법정본가 장소를 기재한다.
 3. 제10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사자가 동성동본인지라도 동일 혈족이 아닌 때에는 "혼인당사자는 시조를 달리함"이라는 취지.
 - 나. 당사자의 인방이 혼가로부터제혼하는 때에는 친가의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그 본적.
 - 다. 민법 제811조 단서 기타 호적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항.

인 구 동 태 사 항

(지정통계 제 3 호)

14	실재상동거일	서 기 19 년 월 일 부터 동거		
15	성혼과정	1. 자 유	2. 중 매	3. 절 총
16	혼인장소	1. 자 택	2. 예식장	3. 기 타
17	직업부		처	
18	교육정도부	1. 미취학 2. 국민학교 3. 중·고교 4. 대학교	처	1. 미취학 2. 국민학교 3. 중·고교 4. 대학교
19	혼인종류부	1. 초 혼 2. 재 혼	처	1. 초 혼 2. 재 혼

- 비고
1. 성혼과정, 혼인장소, 교육정도 및 혼인종류란은 해당하는 곳에 「O」으로 표시한다.
 2. 직업은 실제상 동거당시의 직업을 기입한다.

[양식 제 8 호]

이 혼 신 고

장 귀하

198 년 월 일

1	구 분	부(夫)	처
2	본 적	호주성명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호주와의 관계
3	주 소	세대주성명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와의 관계
4	성 명	본	본
4	출년 월일	서기 년 월 일	서기 년 월 일
5	부모성명 및 본 적	부	본적 성명
		모	본적 성명
	양친성명 및 본 적	양부	본적 성명
		양모	본적 성명
7	복 적 할 가	본적	호주성명
8	신 본 적		
9	수반입적자	성 명	성 명
		분가자와의 관계	분가자와의 관계
10	기 타 사 항		
11	재 판 확 정 일		
12	일가창립원인		장 소

※ 이 신고용지는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3	부 흥 장 소				
14	중 인	본 적 주 소	서 날 출 년	명 인 생 일 월 일	
		본 적 주 소	서 날 출 년	명 인 생 일 월 일	
15	동 의 자	부(夫)의 서명날인	출 년	생 일	
		부(夫)의 서명날인	출 년	생 일	
		처 의 서명날인	출 년	생 일	
		처 의 서명날인	출 년	생 일	
16	신 고 인	부(夫) 서명날인	처 서명날인		

- 비고 1. 제 8 란에는 법정분가 장소를 기재한다.
 2. 제10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혼가를 떠난자가 일가창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나. 친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다. 기타 호적법 제29조 제 2항, 제34조에 해당하는 사항.

인 구 동 태 사 항

(지정통계 제 3 호)

17	실 제 상 등 거 일	서기 19	년	월	일부터	동거
18	실 제 상 이 혼 일	서기 19	년	월	일에	이혼
19	성 혼 과 정	1. 자 유 2. 중 매 3. 절 층				
20	이 혼 사 유	1. 부부불화 2. 가족간불화 3. 건강상 4. 경제문제 5. 기타				
21	교 육 정 도	부	1. 미 취 학 2. 국민학교 3. 중·고교 4. 대 학 교		처	1. 미 취 학 2. 국민학교 3. 중·고교 4. 대 학 교

- 비고 1. 17란과 18란은 사실상의 년월일을 기입한다.
 2. 성혼과정, 이혼사유 및 교육정도란은 해당하는 곳에 「○」으로 표시한다.

사 망 (호주상속) 신고

시 구 읍 면 장 귀하

198 년 월 일

1	사 망 자	본 적	호 주 성 명	호 주 와 의 관 계	읍·면·동 접수		
		주 소	세 대 주 성 명	세 대 주 와 의 관 계			
	성 명	성 별 남·녀	주 민 등 록 번 호 또는 생 년 월 일				
2	사망년월일시 서 기 년 월 일 시 분					주 민 등 록 표 정 리	월 일 ㉞
3	사 망 장 소					주 민 등 록 부 표 정 리	월 일 ㉞
4	기 타 사 항					주 민 등 록 증 회 수	월 일 ㉞
5						인 구 동 태 사 항 (지정통계 제3호)	
6	호 주 상 속 인						
7						신 고 인	
8	사 망 전 직 업						
9						사 망 진 단 자	
10	혼 인 상 태						
11						교 육 정 도	
12	인 구 동 태 사 항 (지정통계 제3호)						

◎ 신고서 작성전에 뒷면 주의사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3 사망의 종류	1. 병사 2. 의인사 (가. 불여의 중독 나. 기타의 재해사 다. 자살 라. 타살 마. 기타 및 불상) 3. 기타 및 불상		
14 사망의 원인	1. 직접사인		
	2. 중간선행사인		
	3. 선행사인		

신고인 주의사항

- 제3란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번호부여가 되어있지 않은 자는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 제7란은 호주상속신고를 동시에 할때에 기재한다.
- 제6란에는 호적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 제3란중 성별, 제5란, 제10란, 제11란, 제12란은 해당하는곳에 "○"으로 표시한다.
- 신고인 자격은 호주, 동거하는 친족, 기타의 동거인, 건물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등 해당자격자를 기재하며 호주상속을 동시에 신고할 경우는 호주상속인이라 기재한다.
- 제13란, 제14란은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신고서는 본적지신고 2부(신고해태시 3부), 비본적지신고 3부(신고해태시 4부)를 제출한다.

공무원 주의사항

- 사망신고는 본적지, 주소지 시, 구, 읍, 면 또는 주민등록지 등에서 접수처리한다.
- 본적지 시, 구, 읍, 면에서 접수할 경우 업무처리요령

본적지 시, 구, 읍, 면에서 할일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할일
사망신고서접수 → 호적부정리 → 주거표정리 → 주민등록지에 통보(서식24호)	통보서접수 → 주민등록표정리 → 주민등록부표정리

-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접수할 경우 업무처리 요령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할일	본적지 시, 구, 읍, 면에서 할일
사망신고서접수 → 주민등록표정리 → 주민등록부표정리 → 관할 시, 구청송부(단, 동에서 접수할 경우에 한함) → 본적지에 사망신고서 송부	사망신고서 접수 → 호적부정리 → 주거표정리

- 신고서 1부는 인구동태조사용으로 시도(통계담당관실)경유 경제기획원(조사통제국)에 제출한다.

● 戶籍手数料規程 (1966.9.30. 大統領令 第731号)

개정 1976. 1. 10 대통령령제 7945 호

제 1 조 (閱覽手数料) 戶籍簿·除籍簿 또는 戶籍法 第 47 條第 2 項의 書類의 閱覽에 관한 手数料는 1 회에 20 원으로 한다. <개정 76.1.10 대령 7945 >

제 2 조 (謄本·抄本の 交付 및 證明手数料) ①戶籍 또는 除去된 戶籍의 謄本이나 抄本の 交付에 관한 手数料는 1 枚에 40 원 (서울특별시에서는 50 원) 으로 한다. <개정 76.1.10 대령 7945 >
②謄本 또는 抄本の 記載事項에 變更이 없다는 事實의 證明에 관한 手数料는 1 件에 20 원으로 한다. <개정 76.1.10 대령 7945 >

제 3 조 (各種證明手数料) ①戶籍 또는 除去된 戶籍에 記載한 事項의 證明에 관한 手数料는 1 件에 20 원으로 한다. <개정 76.1.10 대령 7945 >

②戶籍法 第 47 條의 證明書의 交付에 관한 手数料는 1 件에 20 원으로 한다. <개정 76.1.10 대령 7945 >

제 4 조 (公務員이 職務上 請求하는 경우) ①公務員이 그 職務上の 필요로 戶籍簿나 除籍簿의 閱覽을 請求하는 경우와 戶籍 또는 除去된 戶籍의 謄本과 抄本の 交付를 請求하는 경우에는 手数料와 郵送料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公務員이 그 職務上の 필요로 戶籍의 謄本이나 抄本の 記載事項에 變更이 없다는 事實의 證明 또는 戶籍이나 除去된 戶籍에 記載한 事項의 證明을 請求하는 경우에도 第 1 項과 같다.

제 5 조 (手数料의 帰属) 第 1 條 내지 第 3 條의 手数料는 당해 서울特別市·釜山市와 市·郡의 收入으로 한다.

附 則

제 1 조 (施行日) 이 令은 公布후 30 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제 2 조 (旧法令의 廢止) 1957 年 大統領令 第 1290 号 戶籍및 寄留手数料令은 이를 廢止한다.

부 칙 < 76.1.10 대령 7945 >

이 령은 公布후 30 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統 計 法

法 律 第 980 号 1962 年 1 月 15 日 公 布
改 正 法 律 第 1215 号 1962 年 12 月 12 日 公 布
改 正 法 律 第 2799 号 1975 年 12 月 31 日 公 布

제 1 조 (目 的) 이 법은 統計에 관한 事項을 綜合的으로 調整하고 統計의 體系를 整備함으로써 統計의 眞實性和 統計制度의 效率性의 確立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 2 조 (定 義) 이 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号와 같다.

1. “ 統 計 ” 라 함은 指定統計와 一般統計를 말한다.
2. “ 指定統計 ” 라 함은 中央行政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以下 “ 指定機關 ” 이라 한다) 이 作成하는 統計로서 經濟企劃院長官이 指定하여 告示하는 調査統計와 報告統計를 말한다.
3. “ 一般統計 ” 라 함은 第 2 号에 掲記한 機關이 作成하는 統計中 指定統計 以外の 統計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統計를 말한다.
4. “ 調査統計 ” 라 함은 調査한 資料에 의하여 作成하는 統計를 말한다.
5. “ 報告統計 ” 라 함은 報告된 資料에 의하여 作成하는 統計를 말한다.

제 3 조 (統計作成의 承認) ① 指定統計 또는 一般統計를 作成하고자 하는 機關의 長은 그 統計作成에 관하여 미리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統計作成을 中止하거나 承認을

얼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經濟企劃院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指定機關에 대하여 統計作成의 實施・中止・變更 또는 統計作成事務의 改善를 要求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經濟企劃院長官의 要求를 받은 機關의 長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제 4 조 (申告) ①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指定統計作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個人 또는 法人이나 團體에 대하여 統計資料에 관한 申告를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命을 받은 者가 未成年者나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그 法定代理人, 法人이나 團體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가 申告하여야 한다.

제 5 조 (資格) 統計作成에 관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第6條의 統計調査員을 除外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라야 한다.

제 6 조 (統計調査員) 調査統計를 實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第2條 第2号에 揭記한 機關에 그 統計를 作成하는 期間中 統計調査員을 둘 수 있다.

제 7 조 (實地調査) ①統計作成에 관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第6條의 統計 調査員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는 指定統計의 調査나 確認을 위하여 미리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은 事項에 관하여 檢査 또는 調査資料提出의 要求를 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行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

는 証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제 8 조 (秘密의 保護) 統計作成過程에서 알려진 個人 또는 法人이나 團體의 秘密에 屬하는 事項은 保護되어야 한다.

제 9 조 (統計目的以外의 使用禁止) 指定統計의 作成을 위하여 蒐集된 統計資料는 統計作成의 目的 以外에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統計結果의 公表) 指定統計와 一般統計를 作成한 機關의 長은 遲滯없이 그 統計表를 經濟企劃院長官에게 提出하여 協議한 後 그 統計結果를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公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 (統計資料의 分類) ① 統計를 作成하는 機關 (以下 “統計作成機關” 이라 한다) 이 統計資料를 分類하여 統計表를 作成할 때에는 經濟企劃院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標準分類에 의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計作成機關이 使用할 標準分類의 名稱은 이를 統計表에 記載하여야 한다.

③ 第 1 項의 標準分類에 의하여 分類하기 困難한 統計資料에 대하여는 그 統計作成機關의 長은 經濟企劃院長官의 同意를 얻어 標準分類과 다른 分類를 할 수 있다.

제 12 조 (統計刊行物の 發刊承認) ① 統計刊行物を 發刊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發刊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 1 項의 統計刊行物の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제 13 조 (資料提出의 要求) ① 經濟企劃院長官은 이 法の 施行을 위

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指定機關의 長에 대하여 統計關係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③第3條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 14조 (指定統計作成에 대한 協力) 指定統計의 作成機關의 長은 指定統計를 作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指定機關의 長에 대하여 必要한 協力を 要求할 수 있다.

제 15조 (權限의 委任 等)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所屬機關의 長·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 또는 指定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權限의 一部를 그 委任한 機關의 長의 承認을 얻어 區廳長·市長·郡守 其他 所屬機關의 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제 16조 (補助金) 經濟企劃院長官은 統計의 發展을 위하여 每年度 豫算의 範圍 안에서 統計教育·統計開發·統計調査·統計分析 또는 統計弘報에 관한 事業을 行하는 機關에 대하여 그 運營 및 事業에 必要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제 17조 (罰則) 다음 各号의 1에 該當하는 者は 6月以下の 懲役 또는 5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命令을 받고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한 者

2.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妨害한 者

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虛僞의 調査資料를 提供하거나 虛僞의 陳述을 한 者

4. 統計作成에 관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其他의 者로서
統計作成의 結果를 故意로 眞實과 相異한 것으로 만드는 行爲
를 한 者

제 18 조 (同前) ① 統計作成에 관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從事
하였던 者가 그 職務上 知得한 個人 또는 法人이나 團體의 秘
密에 屬하는 事項을 他人에게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1年以
下の 懲役 또는 10 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에 規定한 者 以外の 者로서 그 職務上 知得한 第1項
의 秘密事項을 他人에게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도 第1項과 같
다.

제 19 조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
로 정한다.

附 則

제 1 조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제 2 조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行한
承認·申告 其他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例에 의한다.

● 통계법시행령

	각	령	제	512	호	1962	년	3	월	10	일	공포
개정	각	령	제	1214	호	1963	년	2	월	25	일	공포
개정	대통령령	제	1763	호	1964	년	4	월	2	일	공포	
개정	대통령령	제	2505	호	1966	년	5	월	2	일	공포	
개정	대통령령	제	4182	호	1969	년	10	월	27	일	공포	
개정	대통령령	제	8116	호	1976	년	5	월	8	일	공포	

제 1 조 (목적) 이 영은 통계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정기관의 범위) 법 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은 특별법에 의한 법인과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기업체 및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국가의 인구·사회 또는 경제에 관한 정책수립에 관련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 3 조 (지정통계의 고시) 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 2 조의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지정통계의 명칭
3. 지정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제 4 조 (일반통계의 범위) ① 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계는 동조 제 2 호에 계기한 기관이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이외의 시를 말한다) 나, 군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인구·사회 또는 경제에 관한 통계로서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로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사회 또는 경제에 관한 통계의 종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조 (통계작성의 승인) ①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통계작성의 목적
2. 조사할 사항, 조사기일 및 조사방법 (보고통계에 있어서는 보고하게 할 사항 및 보고기일)
3. 조사표 (보고통계에 있어서는 보고서 및 그 결과표의 서식)
4. 집계사항
5. 통계결과의 공표예정일
6. 조사표 (보고통계에 있어서는 보고서) 와 그 결과표 기타 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7. 조사경비의 개산액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6 조 (조사표 등의 서식기재사항)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은 지정통계에 있어서는 그 조사표의 서식 또는 보고통계의 보고서의 서식에 제 3 조 각호의 사항과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일반통계에 있어서는 그 조사표의 서식 또는 보고통계의 보고서의 서식에 일반통계의 명칭과 그 작성기관의 명칭 및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조 (통계작성 사무종사자의 자격) ①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통

제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에 계기한 기관에서 통계에 관한 조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초급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에서 통계학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3.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통계에 관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②제1항에서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라 함은 통계작성의 기획사무나 통계의 분석사무를 말한다.

제8조 (통계결과의 검토의뢰) ①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 통계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통계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통계결과의 공표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결과의 공표는 관보 기타 간행물에 하여야 한다.

②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한 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계결과를 공표한 때에는 그 통계 자료를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통계간행물의 범위와 승인) ①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간행물은 통계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로 한다.

②제 1 항의 통계간행물중 법 제12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발간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통계간행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만을 수록하여 당해 통계를 작성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2. 물가나 증권시세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서 매일 발간하는 간행물

③법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의 발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당해 간행물에 수록할 통계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권한의 위임) 법 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협의.
다만, 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에서 작성한 통계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
다만, 시 또는 군에서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 12 조 (보고기일의 준수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보고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의 요구를 받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기일내에 그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보고가 기일내에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을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1. 지정기일경과 3일후에도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 1 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2. 제 1 차 독촉장에 지정된 기일경과 3일후에도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 2 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 제 2 차 독촉장에 지정된 기일경과 3일후에도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보고를 하여야 할 기관의 장에게 보고 지연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공무원징계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기일내에 당해 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지정된 기일내에 예정보고기일을 명시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중간보고에 명시된 기일내에 보고가 도착되지 아니할 때에는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⑥ 제 4 항의 규정은 제 5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는 1 회에 한하며, 중간보고에 명시할 예정보고기일은 본래의 지정기일로부터 6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3조 (통계작성에 관한 확인등)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이나 통계결과의 공표에 있어서의 법 제 3조 제 1항 또는 법 제 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3조 제 1항 또는 법 제 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법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4조 (통계작성의 방법등)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통계작성의 방법·주기 및 기준일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한다. 다만, 지정통계작성의 방법·주기 및 기준일에 관하여는 그 지정통계의 주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 인구동태조사규칙 (1970. 9.16. 경제기획원령제 57 호 한글화)

개정 1971. 3.18 경제기획원령 제 66 호

1976. 6.29 경제기획원령 제 78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시행령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중 인구동태조사 (이하 “ 조사 ” 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사종목) 조사는 출생·사망·혼인 및 이혼의 4 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아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 및 사망확인으로 인한 제적은 사망에 준한다.

제 3 조 (조사종류) ① 조사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의 2 종류로 한다.

② 일반조사는 매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각 종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특별조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신속한 자료수집이 필요하거나 또는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의 만연 기타 수해·한해 등으로 인하여 인구동태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 지역 및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각 종목중 필요한 종목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제 4 조 (신고의무자) ① 출생·사망·혼인 또는 이혼에 관한 신고를 하는 자는 그 신고서와 부분 1 통을 구청장 또는 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이외의 시로 한다. 이하 같다) ·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아·행려사망자 및 무연고사망자에 관한 신고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이 하여야 한다. [신설 76.6.29]
경기원령 78]

③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사망·혼인 및 이혼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그 본적지의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제 5 조 (신고서용지의 교부) ①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은 제 4 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신고서용지의 서식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한다.

제 6 조 (신고기한) 제 4 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기한 내에 관할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에 있어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1 월이내
2. 사망에 있어서는 사망한 날로부터 1 월이내
3.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성립과 동시
4. 이혼에 있어서는 이혼성립과 동시

제 7 조 (신고서의 접수)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 또는 제 4 조 제 1 항 단서와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 6 호 서식의 인구동태조사신고 접수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 8 조 (신고서의 정정)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은 신고의무

자가 제출하는 신고서에 중복·누락·오기 또는 불명한 문자등이 있는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문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고서의 제출) ①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와 제 4 조 제 1 항 단서 및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작성한 신고서를 매 월 종류별로 일괄하여 별지 제 7 호서식의 인구동태조사신고서 구·시·읍·면 총괄표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 또는 시장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읍·면의 장은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할 신고서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총괄표에 기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장이 제출한 신고서 및 총괄표에 중복·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을 때에는 읍·면의 장에게 조회하여 정정한 후 별지 제 8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인구동태조사신고서 군총괄표와 함께 그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구청장·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 이외의 시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 제출한 신고서 및 총괄표에 중복·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조회하여 정정한 후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인구동태조사신고서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도총괄표와 함께 그 달 말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제출기한의 연기)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고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에게,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각각 그 사유를 밝혀 제출기한의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제 11 조 (확인) 경제기획원장관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군수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할 수 있다.

제 12 조 (신고서용지의 배부) 경제기획원장관은 익년도에 필요한 신고서용지를 10월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과 도지사에게,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도지사는 11월 20일까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군수는 11월 30일까지 읍·면의 장에게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신고용지의 수급)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은 별지 제 10호서식의 인구동태조사신고서용지 수급부를 비치하여 신고서용지의 수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14 조 (부족용지의 보급) 신고서용지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읍·면의 장은 군수에게 각각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경제기획원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

직할시장과 도지사가 제출한 신고서를 집계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제 16조 (신고서류의 보존) 경제기획원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과 도지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총괄표는 1년간 보존하고,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집계결과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71.3.18 경기원령 6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76.6.29 경기원령 7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